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4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4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지난해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존 내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내경제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다소 저조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에 투입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그간 수차례의 매각시도가 무산된 우리금융지주는 지방은행과 증권 등 계열사를 시장수요에 맞게 분리 매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공적자금을 일부 회수하고 민영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실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공사가 설립하여 보유한 5개 가교저축은행 지분을 성공적으로 모두 매각함으로써 2011년 이후 추진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실금융회사 정리과정에서 인수한 자산 및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회수 극대화를 위해 맞춤형 매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공사는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통해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예금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314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차등보험료율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부단한 제도개선 등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는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앞 시정조치 요청권과 이행여부 확인 권한을 법제화하여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사전 부실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는 금융정보 취약계층 및 외국인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홍보와 교육 등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ADI)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상호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영국, 필리핀, 알바니아 및 라오스 예금보험 기구와 신규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금융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금융업권, 거래자, 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는 등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차보고서가 공사의 업무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사 장 **곽 배 국**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4 연차보고서

본문 차례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1
제2장	조직 운영	15
	제1절 조직 구성	16
	제2절 조직 관리	22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7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38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44
제4장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49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50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52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55
제5장	리스크 관리	63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64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의 성공적 시행	71
	제3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75
제6장	부실금융기관 정리	81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82
	제2절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가교저축은행 매각	85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별자산의 관리	88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95
	제1절 파산재단 관리	96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101
제8장	부실책임 추궁	105
	제1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06
	제2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11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13
	제4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117
제9장	기금관리	119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20
	제2절 예금보험기금	132
제10장	2014년도 결산	143
	제1절 결산 개요	144
	제2절 결산 기준	145
	제3절 결산 현황	151
부 록		165
	1. 예금보험제도 개요	166
	2. 대외평가	169
	3. 2014년도 주요일지	171
	4. 통계	172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4 연차보고서

표 차례

〈표 I - 1〉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3
〈표 I - 2〉 2014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4
〈표 I - 3〉 2014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 현황	5
〈표 I - 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9
〈표 I - 5〉 2014년 중 주요 공적자금 회수내역	10
〈표 I - 6〉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11
〈표 I - 7〉 2014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12
〈표 II - 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17
〈표 II - 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17
〈표 II - 3〉 2014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18
〈표 II - 4〉 임 원	20
〈표 II - 5〉 조직도	21
〈표 II - 6〉 인원 현황	21
〈표 II - 7〉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25
〈표 II - 8〉 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26
〈표 II - 9〉 행복예감 활동 3대 중점사업 개요	31
〈표 II - 10〉 지역별 자매결연 전통신장 현황	32
〈표 II - 11〉 2014년 사회공헌 활동 내역	33
〈표 II - 12〉 제4차 정보화 1단계 (2014년) 세부 이행과제	35
〈표 III - 1〉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이미지	39
〈표 III - 2〉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추이	40
〈표 III - 3〉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 점검 실적	40
〈표 III - 4〉 2014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43
〈표 III - 5〉 여신고객 불편 해소 방안	44
〈표 III - 6〉 2014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46
〈표 IV - 1〉 2014년 주요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52
〈표 IV - 2〉 2014년 주요 발간물	54
〈표 IV - 3〉 2014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실적	60
〈표 V - 1〉 「예금자보호법」 개정 내용	67
〈표 V - 2〉 시정조치 요청권 부여 후 조사업무 흐름도 변화	68

〈표 V-3〉 2014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69
〈표 V-4〉 차등평가의 구분	72
〈표 V-5〉 등급별 적용 요율(금융권역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72
〈표 V-6〉 금융권역별 설명회 개최 실적	73
〈표 V-7〉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추가·수정 내역	77
〈표 VI-1〉 2013년 이후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83
〈표 VI-2〉 2014년 부실금융기관별 경영관리 인력 파견 현황	84
〈표 VI-3〉 2014년 부실저축은행 정리(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	86
〈표 VI-4〉 2014년 가교저축은행 매각 현황	87
〈표 VI-5〉 특별자산 유형별 관련 대출 현황	89
〈표 VI-6〉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89
〈표 VI-7〉 특별자산 4단계 회수관리 체계	90
〈표 VI-8〉 특별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91
〈표 VI-9〉 매각 대상 자산별 외부 전문기관 유형	92
〈표 VI-10〉 특별자산 회수유형별 실적	93
〈표 VII-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97
〈표 VII-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99
〈표 VII-3〉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100
〈표 VII-4〉 2014년 중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	101
〈표 VII-5〉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누계)	102
〈표 VII-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103
〈표 VIII-1〉 부실금융기관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누계)	107
〈표 VIII-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109
〈표 VIII-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109
〈표 VIII-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누계)	111
〈표 VIII-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누계)	112
〈표 VIII-6〉 2011년 이후 영업 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114
〈표 VIII-7〉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115
〈표 VIII-8〉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현황	116
〈표 IX-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121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4 연차보고서

표 차례

〈표Ⅸ- 2〉 금융권별 특별기여금 수입	121
〈표Ⅸ- 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122
〈표Ⅸ- 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123
〈표Ⅸ- 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124
〈표Ⅸ- 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4년)	125
〈표Ⅸ- 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25
〈표Ⅸ- 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126
〈표Ⅸ- 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127
〈표Ⅸ-10〉 상환기금의 회수(2014년)	128
〈표Ⅸ-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129
〈표Ⅸ-12〉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130
〈표Ⅸ-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131
〈표Ⅸ-14〉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133
〈표Ⅸ-15〉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수입	133
〈표Ⅸ-16〉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134
〈표Ⅸ-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135
〈표Ⅸ-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135
〈표Ⅸ-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4년)	136
〈표Ⅸ-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37
〈표Ⅸ-21〉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137
〈표Ⅸ-22〉 손해보험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138
〈표Ⅸ-23〉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4년 및 누계)	139
〈표Ⅸ-24〉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139
〈표 X- 1〉 요약 재무상태표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55
〈표 X-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56
〈표 X- 3〉 요약 재무상태표 (예금보험기금)	157
〈표 X- 4〉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158
〈표 X- 5〉 요약 재무상태표 (공사회계)	159
〈표 X- 6〉 요약 손익계산서 (공사회계)	160
〈표 X- 7〉 요약 재정상태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1
〈표 X- 8〉 요약 재정운영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2

〈그림 I -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8
〈그림 II - 1〉 KDIC 비전 및 전략 체계도	23
〈그림 II - 2〉 KDIC 성과관리체계도	28
〈그림 II - 3〉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29
〈그림 II - 4〉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2014~2016)	34
〈그림 VII - 1〉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100
〈그림 VII - 2〉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102
〈그림 VIII - 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108
〈그림 VIII - 2〉 은닉재산 신고센터 업무흐름도	115



동원생명
생명보험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미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비전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전략목표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기금건전성
제고로 신뢰 회복

최고 품질의
예금자보호서비스

지속가능경영
확립

전략과제

효율적 회수를 통한
부채감축

합리적 기금관리를
통한 자원확충

맞춤형
예금자 보호 강화

핵심역량 강화 및
자원관리 효율화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실효성 있는
부실위험 관리

금융회사 정리절차
선진화

창의혁신을 통한
전략적 변화관리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

선도적 정부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핵심가치

TRUST

투명성
Transparency

책임성
Responsibility

공익성
Utility for public

전문성
Specialty

협동성
Teamwork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301 개

2014년 부보 금융기관 수

2014년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실적

9 건

2014년 영업정지
금융기관 수

1 개

2014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10 만 2,354 명

646 회

2014년 공사 임직원 수

273 개

2014년 표시제도 현장점검
1인당 영업점 수

17 건

2014년 공사 단독조사 실적

2 조 4,449 억원

2014년 공적자금 회수액

5,000 만원

예금보험 한도액

2 조 8,551 억원

2014년 예금보험기금 회수액

KDIC

2014년 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지방은행, 증권계열 등으로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보유지분 전량(56.97%)을 매각하였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방은행 등 분리매각 후 우리금융지주와 합병 절차를 거쳐 보유지분 일부(5.94%)를 매각하였다. 또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자산의 신속한 회수 및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회수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자산 관리 및 회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부실책임을 추궁하였다.

한편, 2013년 중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해솔저축은행을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부실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설립된 가교저축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2011년 이후 추진되어온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2014년부터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앞 시정조치 요청권과 조사·공동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권한을 법제화하여 사전 부실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밖에도,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신흥국에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등 국제 위상을 제고하였다.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공사는 리스크 상시감시 모형을 활용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재무현황 변동 및 잠재 리스크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2014년 중에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리스크감시모형(REFS)의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리스크감시모형의 정합성 및 설명력을 높여 리스크 상시감시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14년 5월에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사의 조사 및 공동검사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치 결과 및 조치 대상 부보금융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공사와 금융감독원과의 부보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MOU가 개정되어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사 검사서의 분리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한편, 공사는 부실화가 진행될 경우 대규모의 기금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형·계열 저축은행 6개사를 비롯한 총 9개 부보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BIS비율 적기 시정조치 기준 +2% 미만, 3회계연도 연속 적자 등 단독 조사 요건에 해당되는 1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단독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 및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특히, 2014년 5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보된 시정조치 요청권을 활용하여 총 13개 저축은행 단독조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앞 시정조치 요청을 완료하였다.

〈표 1-1〉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공동검사	→	2010년 24개사	→	2011년 31개사	→	2012년 9개사	→	2013년 18개사	→	2014년 9개사
단독조사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8개사	→	2013년 11개사	→	2014년 17개사

그 외에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저축은행 대표이사 및 리스크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저축은행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하여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적극 유도하였다.

부실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 및 제도 개선

공사는 2014년 중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해솔저축은행을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표 1-2〉 2014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저축은행명
2014. 5. 2	해 솔

공사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여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을 정지되고 월요일에 인수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금자 및 여신거래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공사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으로 부실저축은행의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부실저축은행을 신규 또는 기존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함에 따라 공사의 가교저축은행 매각·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공사는 적극적인 잠재인수자 물색 등의 노력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는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하여 예금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의 매각·관리 부담을 해소하는 정리체계를 정착시켰다.

〈표 1-3〉 2014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 현황

영업정지 저축은행	→	인수 금융기관
해 소		웰컴저축은행

아울러, 저축은행업권의 계속된 실적 부진과 인수자 부족 등으로 가교저축은행의 시장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공사는 가교저축은행의 매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매각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수의향자의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예나래저축은행은 유상감자를 통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금 몰취 관련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등 매각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각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13년 말 현재 공사가 보유한 예쓰·예나래·예성·예주·예신 등 5개 가교저축은행 지분 모두를 2014년 중 성공적으로 매각 완료함으로써 2011년 이후 추진되어온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하였다.

특별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자산별로 특화된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적정 매각시기 및 매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PF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회수방식을 추진하고, 관련 관공서 등과 협조하여 인허가 사업권 등을 취득하거나 연장하여 자산 가치를 확보하였다. 유사 성격의 자산은 그룹화하여 관리하고 자산별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회수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고가 미술품에 대하여는 경매 대상 미술품의 전시회 개최, 해외경매 출품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 회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매각자문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매각방안 등을 심의 및 보고함으로써 특별자산 회수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방식을 단일기관에서 복수기관에 의한 평가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검사역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매각자문단 및 전문경영인 Pool을 구성하고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매각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공사는 파산재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파산재단 사무실을 통·폐합하고, 적정 업무보조인 수 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파산재단 운영경비 절감 및 운영의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파산관재인 대리인에 대한 교육, 파산재단 업무현황 조사,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공사는 파산재단의 자산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산의 보유현황 및 매각대상 자산을 파악하고 자산유형별 맞춤형 매각방안을 수립하는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파산재단별로 연간 배당목표액을 부여하고 환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기배당을 유도하는 등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중 2조 6,474억 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였다.

공사는 수시로 파산재단의 비용 대비 환가효율성을 점검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재단에 대해서는 종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파산채권의 조기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전체 487개 파산재단 중 438개를 종결하였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부실책임 추궁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 부실 발생 즉시 부실책임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사반을 편성하여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부실책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영업 정지된 28개 저축은행 및 1개 손해보험 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영업 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은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실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회수가능성을 감안, 우선 순위 부실책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한편 후순위 조사대상 채무기업은 검찰 등에서 사용하는 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자료를 입수하는 등 부실책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부실책임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복잡·다양해지는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를 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외부 심의위원으로 신규 보강하여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아울러, 부실책임조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부당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부실책임조사 착수시점부터 전 과정에 걸쳐 상시적으로 소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권익보호체크리스트 마련, 부실책임조사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의 택배 조회식 화면 제공 등 실질적인 권익보호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등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부터 신속하게 재산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감사 워크숍, 지역별 여신담당 임원 간담회, 직원 대상 부실예방 교육 등 직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업권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에 노력하였고, 위법·부당행위자 관련 판례 등을 분석·정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제고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2011년 이후 총 30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2014년 말까지 예금보험금 지급 등으로 지원한 총 27조 1,167억원을 차질 없이 적기에 조달하였다. 2014년 중에는 1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3,078억원을 특별계정에서 지원하였다.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예금보험료·차입금·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1년 1월부터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그림 1-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또한, 공사는 2012년 7월 및 2013년 11월, 2014년 10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총 2,500억원을 무이자·장기 상환조건(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받는 한편,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을 발행하여 외부차입금을 상환하고 채권전자입찰 시스템(E-BAS) 구축, 한도대출약정(한도 10.5조원) 만기 연장시 금리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였다.

〈표 1-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조원)

지 원 액			조 달 액		
삼화 등 30개 저축은행	출자, 출연 및 예금보험금 등	27.1	계정 간 차입	1.8	
			외부조달(특별계정채권 발행 등)	22.4	
			예금보험료 등	2.9	
합	계	27.1	합	계	27.1

아울러, 공사는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 포함)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4년 중 가교저축은행 매각 및 파산배당금 등으로 총 2조 8,551억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와 관련하여 차등평가 결과에 대한 부보금융기관의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는 등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였으며,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2014. 4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 또한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차등평가 실시 전에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2014년 처음으로 실시된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공사는 목표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예금보험료 감면과 관련하여 2013년 말 계정별 기금적립률에 따라 목표규모 상한을 초과한 금융투자계정은 예금보험료를 면제하였고, 하한을 초과한 생명보험계정 및 손해보험계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료 일부를 감액(각 38% 및 1%) 하였다.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

공사는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4년 말 현재 공사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상환해야 할 82.4조원 중 총 63.9조원을 정부출연금(45.7조원)과 회수자금 등(18.2조원)으로 상환하였다. 잔여 부채 18.5조원은 회수

자금과 특별기여금 등으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으로, 2013년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결과는 잔존부채의 상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공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지분매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2014년 중 출자 금융회사 지분매각, 배당 및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총 2조 4,449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1-5〉 2014년 중 주요 공적자금 회수내역

경 남 은 행	• 2014. 10월, BS금융지주 앞 매각으로	12,269억원 회수
광 주 은 행	• 2014. 10월, JB금융지주 앞 매각으로	5,003억원 회수
우 리 은 행	• 2014. 12월, 보유지분 일부(5.94%)매각으로	4,531억원 회수
제 주 은 행	• 2014. 1월~3월, 보통주 장중매각을 통해 • 2014. 7월, 보통주 블록세일을 통해	16억원 회수 226억원 회수
대우조선해양	• 2014. 1월, 보통주 블록세일을 통해	381억원 회수
기 타 주 식	• 2014. 총 9회의 KR&C 보유 비상장주식 공매 등을 통해 12개 종목을 매각하여	63억원 회수
기 타	• 2013. 1월~12월, 출자주식 배당금으로 • 2013. 1월~12월, 파산배당금으로	2,944억원 회수 164억원 회수

공사는 2013년 6월 2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에 따라 자회사 분리매각을 2014년에 추진하였다. 동 방안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은 2014년 10월에 각각 BS금융지주 및 JB금융지주에 지분 각 56.97%를 매각하여 총 1조 7,272억원을 회수하였고,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계열 6개 자회사 지분은 2014년 6월에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직접 매각하였다.

우리은행은 2014년 6월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따라 우리은행의 합병 및 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결과 2014년 11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우리은행 지분 5.94%를 매각하여 4,531억원을 회수하였다.

제주은행 지분 16.38% 중 1.27%는 2014년 1월~3월 장중매각을 통해 16억원을 회수하였고, 잔여지분 15.11%는 2014년 7월 블록세일을 통해 전량 매각하여 226억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KR&C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0.55%는 2014년 1월 블록세일을 통해 381억원을

회수하였고, 기타 비상장주식은 공매 등을 통해 12개 종목을 매각하여 총 63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1-6〉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총지원액	기회수액 ¹⁾	잔여지분 평가액 ²⁾	공사 지분율
우리은행(舊우리금융지주)	127,663	79,373 ³⁾	34,514	51.04
수 협	11,581	-	10,935	우선출자증권
서울보증	102,500	24,696	1,361	93.85
한화생명	35,500	14,212	17,820	24.75
합 계	277,244	118,301	64,630	-

주 : 1) 지분 매각, 배당금,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

2) 상장주식은 2014년 말 종가 기준, 비상장주식은 2014년 말 공사 결산서 기준

3) 경남·광주은행 매각 회수금액 포함

능동적인 예금자보호 서비스 실현

그간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해 공사는 예금 데이터를 복원하여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적극적인 예금자 안내를 실시하는 등 예금자보호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인 예금보험포시제도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부보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시제도 점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규 온라인 점검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해당 업무 담당직원의 1인당 생산성을 384% 향상시켰다. 또한, 공사는 금융취약계층인 외국인에게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안내 자료를 6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배포·비치 하였다.

한편, 공사는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사회공헌활동 브랜드명 공모를 통해 '행복예감(預感)' 브랜드명을 도입하였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임직원 기부금을 활용하는 '기부청원제'도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영진흥원, 한국노인

종합복지관협회 등과 협력하여 초등학교, 상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한국창의재단을 통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생활금융교육을 시작하였다.

〈표 1-7〉 2014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초·중·고등학생	노년층	전통시장 상인	다문화	일반인 등	합 계
인원수	50,023	8,180	41,320	367	2,464	102,354

공사는 국민들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금융 거래 시 예금자보호 여부 확인을 유도하는 ‘행동유발형 홍보’를 2014년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 핵심 내용에 대한 시리즈 광고를 신규 제작하여 신문·잡지, 교통매체와 더불어 케이블TV 및 라디오를 통해 집중 홍보하였다.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 및 공사에 대한 인지도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 2013년도 89.5% → 2014년도 90.1%, 공사 인지도 : 2013년도 86.0% → 2014년도 87.9%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예금보험기구 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부응하여 공사는 신흥국의 예금보험제도 구축 또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2010년 12월부터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4년까지 총 15개 신흥국과 동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정부의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에도 참여하여 몽골,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현대화,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간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은 신흥국의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령 제정 및 제도 도입 등 정책적 자문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4년부터는 IT시스템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탄자니아·필리핀 「예금보험시스템 구축 지원」 KSP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IT 업체와 협업을 통해 국내 IT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공사는 2014년 총 16개국 18개 기관과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예금보험기구와 예금보험 현안에 대한 정보·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사는 2014년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와 공동으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사가 최초로 주최한 해외 예금보험기구 간 지식공유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에는 IADI 사무총장을 비롯한 22개국 금융안전망 기구 임원 및 고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도 공사는 IADI 집행위원국으로서 주요 의제 논의, 연구 및 조사 활동 등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공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2014. 6. 1.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사 창립 18주년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1절 조직 구성

1. 예금보험위원회 및 이사회

가.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사 사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공사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기금 계정간의 거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지정,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예금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결정, 정리금융기관과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공동검사 참여 요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표 11-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014년 12월말 현재)

구 성		성 명
당연직 위원	예금보험공사 사 장	김 주 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 찬 우
	기획재정부 차 관	주 형 환
	한국은행 부총재	장 병 화
위촉직 위원	금융위원회 위 촉	이 흥 권
	기획재정부장관 추 천	이 철 환
	한국은행총재 추 천	김 희 경

〈표 11-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내 용
의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정관의 변경 •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 출연금, 예금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내지 납부 유예 • 예금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 예금보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송부 요청 또는 공동검사 참여 요청 •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 조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 부실우려금융기관의 결정 • 기금 계정간의 거래 •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의 공개 방법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관련 필요 사항 •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관련 필요 사항 • 가지급금의 지급 •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자금지원 등의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 • 공사 업무와 관련한 제규정의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자금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 대상 유가증권의 지정 - 예치 대상 부보금융기관의 지정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분기별 점검실적 보고

〈표 II-3〉 2014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일 자	처 리 안 건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안 • ○○저축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 ○○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 2014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변경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2014년도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2013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회계, 공사 회계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회계의 결산안 • 2013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집행실적 보고 • 2013년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계정간거래 내역 보고 • 2013년도 운영경비 정산결과 보고 • ○○생명보험(주)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 • 2013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우리금융지주(주),우리·광주·경남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및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정상화계획 추가안 •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국내지점 등의 2014 사업연도 차등보험료율 결정안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계획안 및 등 채권에 대한 국가의 채무보증 신청안 • ○○증권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안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3/4분기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2013.12월말 결산 부보금융기관 등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안 • 목표규모 초과 계정에 대한 예금보험료 감면 기준 변경 및 감면 결정안 •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 부보금융기관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3월말 결산 부보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안 • 2014년 3/4분기 공동검사 추가 참여 요청안 • 2014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일 자	처 리 안 건
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4/4분기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 ○○ 등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 2014 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반기결산 결과
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 2014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6월말 결산 부보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안 •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결과 보고 • ○○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 ○○증권(주)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안
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나. 이사회

이사회는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7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부 규정의 제정 및 폐쇄, 임원의 보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조직·인사 등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다른 법령·정관 또는 다른 내규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표 11-4〉 임 원

(2014년 12월말 현재)

직 위	성 명
사 장	김 주 현
부 사 장	조 현 철
상 임 이 사	정 왕 호
상 임 이 사	정 옥 호
상 임 이 사	신 승 우
상 임 이 사	김 광 남
비 상 임 이 사	이 상 일
비 상 임 이 사	조 흥 식
비 상 임 이 사	이 술 영
비 상 임 이 사	최 승 호
비 상 임 이 사	양 돈 선
비 상 임 이 사	최 성 수
비 상 임 이 사	이 재 연
감 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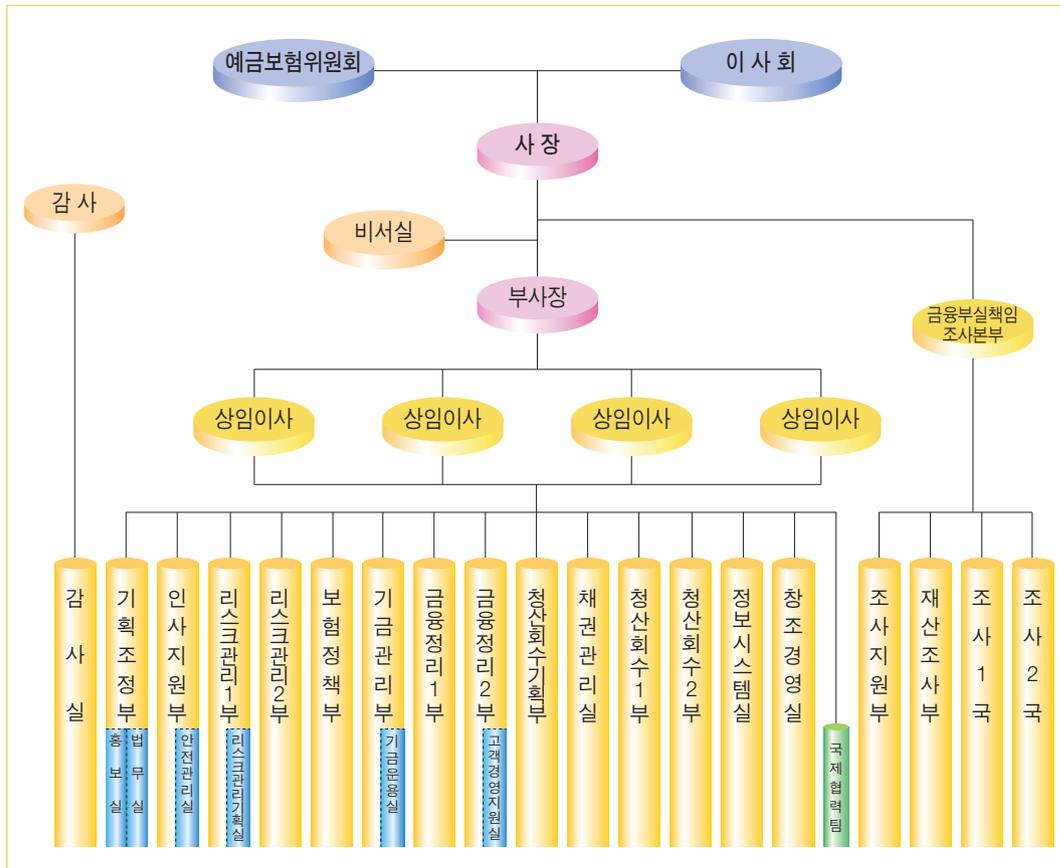


2. 조직 일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기획조정부, 인사지원부, 리스크관리1부, 리스크관리2부, 보험정책부, 기금관리부, 금융정리1부, 금융정리2부, 청산회수기획부, 청산회수1부, 청산회수2부, 정보시스템실, 채권관리실, 창조경영실, 비서실, 감사실 및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11부 5실 1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5〉 조직도

(2014년 12월말 현재)



〈표 II-6〉 인원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현황, 단위 : 명)

구분	임원	직원		합계
		일반직	별정직 ²⁾	
인원	13 ¹⁾	539	94	646

주 : 1) 감사 공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비상임이사 7인 포함
 2) 변호사·박사 등 전문직과 경영관리인, 파산관재인 대리인 및 감사인력 등 특장직

제2절 조직 관리

1. 비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가. 비전체계

(1) 공사 비전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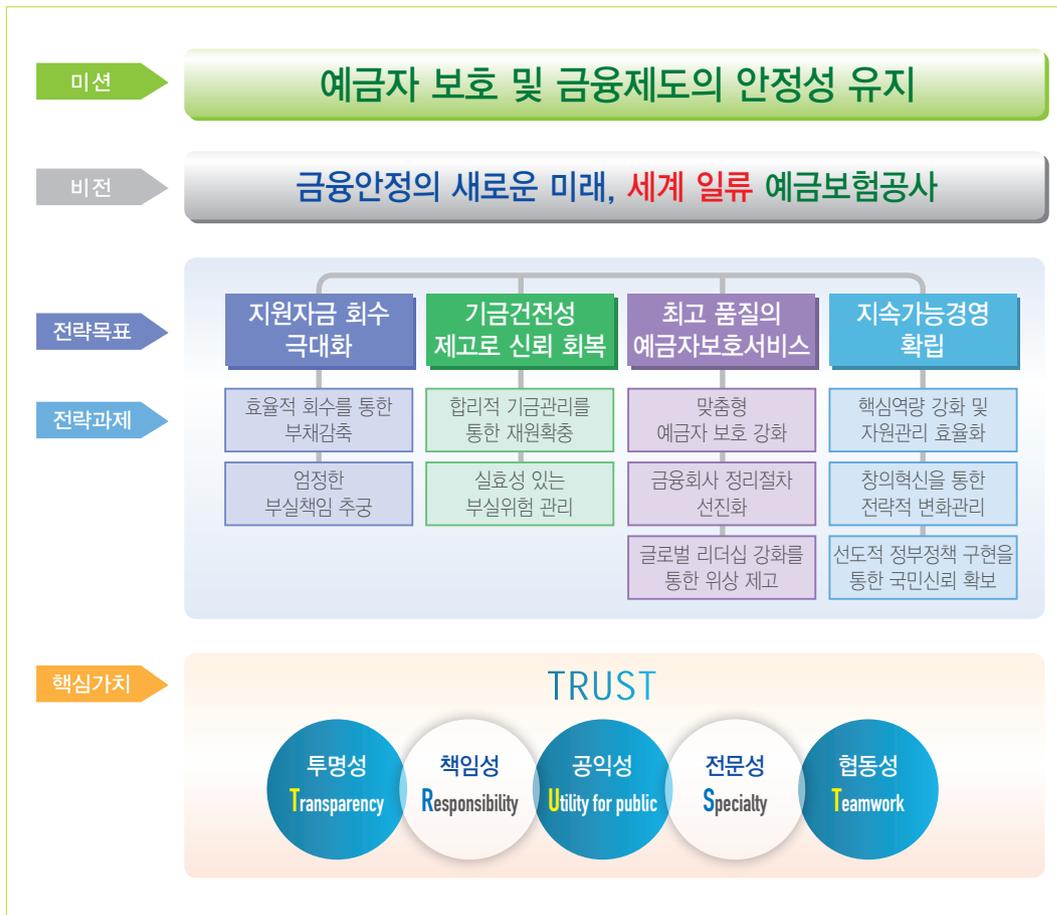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제도개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사는 그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고, 예금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수준의 예금보험기구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 비전 및 전략체계도

〈그림 11-1〉 KDIC 비전 및 전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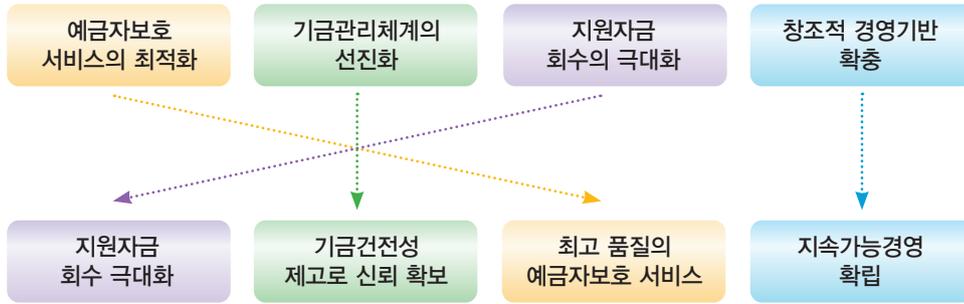


나. 전략목표 · 전략과제의 재정비

공사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및 경영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14년 9월 기존의 전략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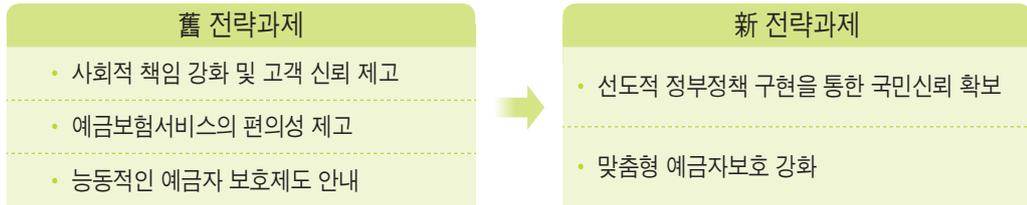
부채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회수부문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를 전략목표 내 우선 배치하여 목표의 지향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 전략목표 수정 및 배치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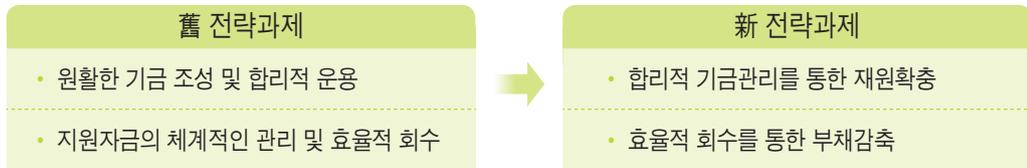


〈 전략과제 수정 〉

- 공공기관 정상화 및 정부3.0 등 정부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과제 신설 및 유사과제 통합으로 과제 수행의 효율성 제고



-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략과제의 방향성을 제고



- 상위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과제를 조정·재배치하는 동시에 문구를 간결화



다.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공사는 비전을 달성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전략목표로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기금건전성 제고로 신뢰확보’, ‘최고 품질의 예금자보호 서비스’ 및 ‘지속가능경영 확립’ 으로 재정비하고, 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10대 전략과제를 수정 및 재배치하였으며, 세부 실행과제도 5년간(2015~2019)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재수립하였다.

〈표 11-7〉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 부 실행 과 제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효율적 회수를 통한 부채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지분 및 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 MOU 관리 효율성 제고 •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강화 • 특별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극대화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책임조사 및 사후 관리 강화 •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재산조사 효율적 실시
기금건전성 제고로 신뢰 확보	합리적 기금관리를 통한 재원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 • 차등보험료율제의 원활한 운영 • 상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상환대책 이행 •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 균형 관리
	실효성 있는 부실위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감시 역량 및 분석 서비스 강화 • 리스크 요인의 조기파악 및 적시 대응 • 조사·공동검사의 효율적 수행
최고 품질의 예금자보호 서비스	맞춤형 예금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고 편리한 보험금 지급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예금보험 정보 제공 • 예금보험 범위의 정합성 제고
	금융회사 정리절차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금융회사의 신속하고 효율적 정리 • 대형금융회사 등에 대한 정리제도 선진화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의 글로벌 전파 및 공유 • IADI 및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 강화
지속가능 경영 확립	핵심역량 강화 및 자원관리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업무 중심의 효율적 조직 및 예산 운영 • 보수·성과평가 제도의 합리성 제고 •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 정보시스템 역량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창의혁신을 통한 전략적 변화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지향의 조직문화 구축 • 미래과제의 발굴 및 전략적 대응
	선도적 정부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와 협업을 통한 유능한 공사 구현 • CS경영체제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정착

2. 역동적인 인사, 조직문화 구현

가.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하이-KDIC」 프로그램 실시

공사는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친절한 대국민 서비스(Hi)’와 ‘공사의 위상 및 역량 강화(High)’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이-KDIC」 프로그램을 2014년에도 시행하였다.

「하이-KDIC」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소통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 및 ‘다함께 실천’ 등 3대 실행과제는 공사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 II-8〉 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소통 활성화 (전방위 소통)	문화 데이	• 정부의 ‘문화융성’, ‘일·가정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장려
	스마트 보드	• 직급별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보드를 구성하여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
	Cross Meeting (합동간담회)	•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부서(팀)간 회의 개최
	해피 타임	• 경영진이 전사적 차원에서 직원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행사
	런치콜	•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CEO와의 점심 이벤트 프로그램
	티앤틱	• CEO가 정기적으로 대상 팀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
공감대 형성 (행복한 일터)	사회공헌활동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부서 1도움주기, 무료급식 등 다양한 활동 실시
	신입직원 멘토링	•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배직원이 신입직원을 전담하여 일정기간 지도
	사내공모제	• 사내의 필요 인재를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 증대
	KDIC-Highway 연수	•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직급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극기훈련 등의 연수 실시
	Follow-up 연수	• 입사 5년차 이상 직원들의 유대감 강화 및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도모
가정의 날	•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가정친화 및 자기계발 촉진	
다함께 실천 (핵심가치 공유)	KDIC-다움	• 핵심가치의 주요내용 및 실천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태도를 체화하는 교육형 워크샵 프로그램
	협업광장· 공유광장	• 지식경영 관련 지식포털시스템 운영
	파고 TV	• 경영이념, 경영전략회의, 홍보/보도자료 등 경영전략 공유를 위한 VOD 서비스 제공

나. 회수기능 강화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개편

공사는 부채감축 등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회수부문의 기획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채권관리1실 신설 및 재산조사부 확대 등 관련 부서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회수극대화를 추진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사전 리스크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 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강화를 탄력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 조정 및 임시조직 활용 등을 통해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고 업무 처리의 생산성도 제고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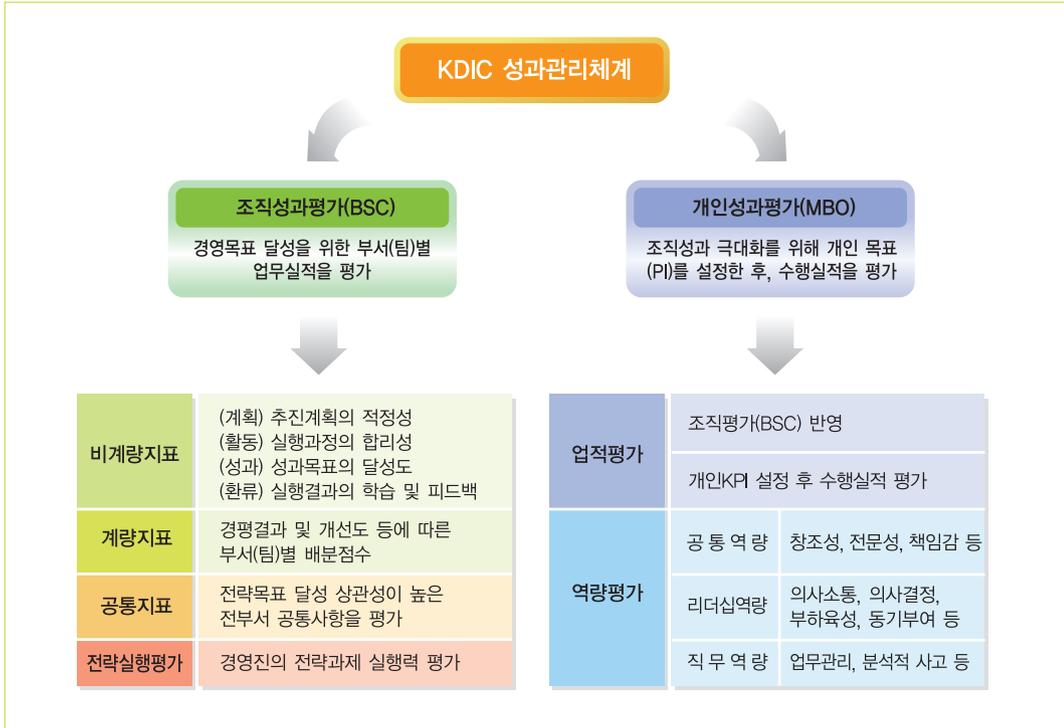
다.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제도 운영

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 말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alanced Score Card : BSC)를 도입하여 2006년 부서 단위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2007년 팀 단위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였다. 2009년부터는 성과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성과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4년에는 비계량지표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성과측정의 계량화 및 우수 계량지표 발굴을 위해 업무 계량화 노력도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전직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노사합의로 도입한 개인성과 평가제도(MBO)를 2012년 전산화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2014년에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의 비율 조정, 경력평정 개선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였다.



〈그림 II-2〉 KDIC 성과관리체계도



3.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가. 윤리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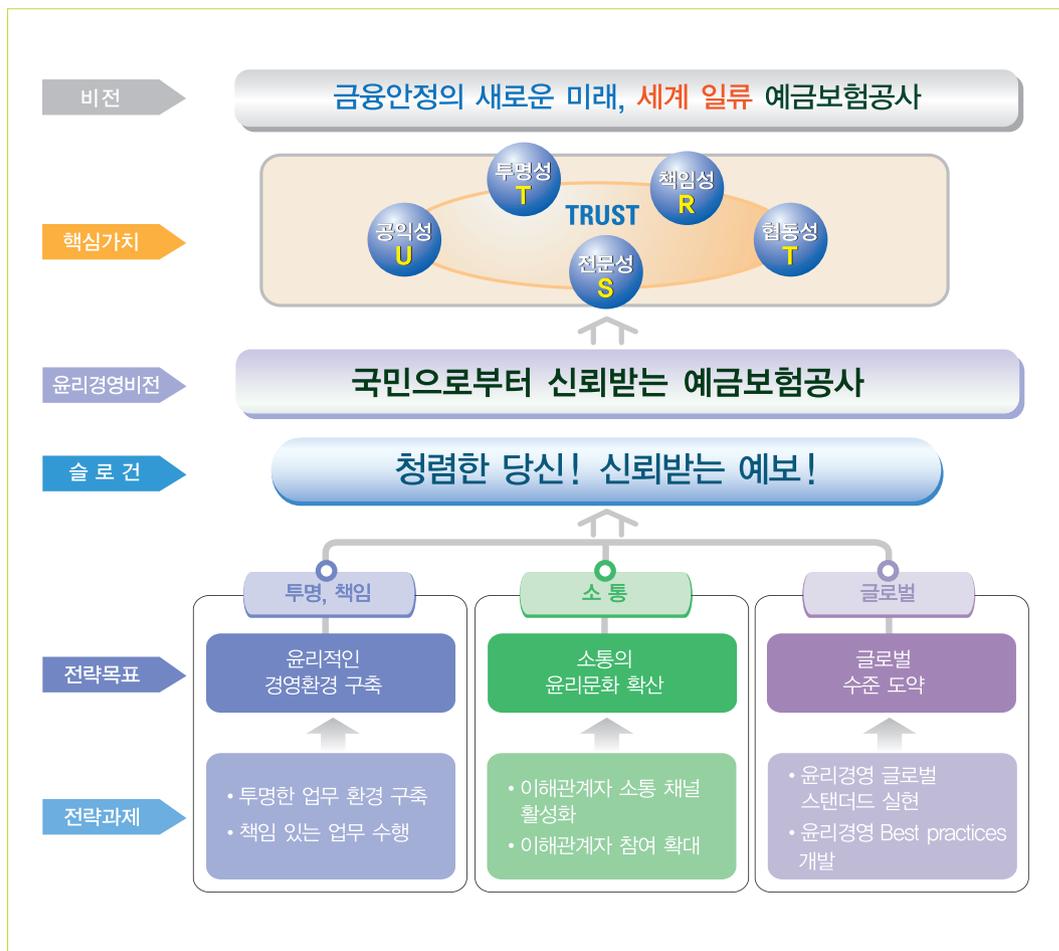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영의 대표 핵심가치를 TRUST(Transparency, Responsibility, Utility for public, Specialty, Teamwork)로 정하고,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및 연간 윤리경영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윤리경영과 관련한 경영환경 및 정부 정책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통해 윤리경영체계의 지속적 개선과 윤리경영 문화의 정착·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청렴·윤리경영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제고함과 동시에 청탁 등 실제 윤리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대내적인

윤리경영 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스토리텔링형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실시, 청렴·윤리 실천리더 워크숍 실시, 청렴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객접점 업무기관인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반부패·청렴 과제를 발굴·추진토록 조치하고 파산관재인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공사의 윤리경영이 고객접점 조직에까지 전파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UN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에 윤리경영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속가능경영 실태 조사(KoBEX SM)에 참여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수준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받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위로 선정되었으며, KoBEX SM 측정 결과에서도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2013년에 이어 유지하였다.

〈그림 11-3〉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나. 사회공헌 활동

(1) 사회공헌 활동 브랜드 도입 및 지속적 확대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뢰에 보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임직원 및 대학생 대상 사회공헌 활동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공사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실히 참여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공사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활동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공사 사회공헌 활동의 정체성 확립 및 임직원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임직원 사내공모를 통하여, 사회공헌 활동 브랜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행복예감(預感)”이라는 공사 사회공헌 브랜드는 국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행복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의미한다. 이후 공사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은 행복예감 활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 브랜드 취지에 맞게 다양한 수혜대상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사 임직원이 행복예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예감 활동 자발적 완주 프로그램」을 2014년도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공사는 수혜기관별, 시즌별 맞춤형 활동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2) 협업 가치를 창출하는 행복예감 활동 추진

공사는 2014년도 행복예감 활동으로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행복예감 활동의 단순 양적 증가에서 벗어나 내실화되고 방향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동 3대 중점사업이란, 사회안전망 사업·환경보호 사업·글로벌 사업으로 공사 단독이 아닌 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공사는 현충원 단순 방문 봉사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 유공자들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국가보훈처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실시하였다. 서울 중구 소재 국가 유공자 가구의 주택을 개보수 하는데 임직원이 직접 참여함과 동시에 관련 비용 및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겨울철 연탄을 필요로 하는 서울 소재 국가유공자 전체 가구에게 10,800장의 연탄을 기부하였으며, 임직원이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국가유공자 가구에 직접 연탄 나눔을 하는 행사도 진행하였다.

환경보호 사업으로 공사는 기존의 청계천 정화 활동이라는 지역사업에서 벗어나 산림청, 강원도청과 협업하여 전국적 환경보호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다.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산에 3,000본의 나무를 임직원이 함께 직접 식수하고 향후 10년간 재조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하여 10년간 58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에 공기업 최초로 산림정책발전 유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장상을 수상하였다.

글로벌 사업으로 공사는 금융 소외계층 중에 하나인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 다문화센터와 협업으로 실시한 다문화 금융캠프를 확대하여 서울시 등과 협업으로 서울지역 전체 다문화 센터를 대상으로 한 금융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표 11-9〉 행복예감 활동 3대 중점사업 개요

구 분	사회안전망 사업	환경보호 사업	글로벌 사업
목 적	공사 설립목적(금융안전망)과 유사,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며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	녹색성장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구현 목적	공사의 활동이 국내사업 위주였던 점에서 사업다변화 목적
협업기관	국가보훈처 등	산림청, 강원도 등	서울시, 다문화센터
주요활동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연탄)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다문화가족 지원 (기자재지원, 캠프)

(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 8월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소재한 통인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12년부터는 매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도시락 데이)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점심시간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상인 대학 강의시 전통시장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13년에는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파산재단 소재 지역의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2곳, 대구·전주 소재)을 맺었으며, 2014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4개 지역(수도권·충청·광주·제주 등) 소재 전통시장과도 자매결연을 맺었다. 자매결연을 맺은 각 지역 전통시장에는 매월 장보기 행사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하였다.

〈표 II-10〉 지역별 자매결연 전통시장 현황

지 역	전 통 시 장	지 역	전 통 시 장
수 도 권	안양 중앙시장	전 북	전주 남부시장
총 청	대전 중앙시장	광주·전남	목포 동부시장
대구·경북	대구 칠성시장	제 주	제주 동문시장

(4)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다양한 행복예감 활동

공사는 2014년 중 임직원 기부금(1구좌 5,000원),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및 법인 카드 포인트 전환액 등으로 총 2억 1,653만원의 「행복예감기금」을 조성하여, “이웃과 공감”, “지역과 공감”, “농촌과 공감”, “환경과 공감” 등 네 분야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으로 1억 6,989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웃과 공감” 활동은 공사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생활금융교육(예금보험제도 등 생활금융 지식 공유)외에 예보꿈나무 장학사업 확대 시행(기존에는 수도권 및 다동·무교동 상가 번영회의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1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성적우수자 뿐 아니라 예체능 특기자·효행사례자 등에게도 장학금을 지원), 장애우 결연사업(정신지체 장애우 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 및 장애인 생활 시설인 ‘승가원’에서 봉사활동), 사회복지 단체 등에 대한 성금·물품 후원 사업, 가족친화형 사회공헌 활동(동호회 연계) 및 개별/그룹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과 공감” 분야에서는 무료급식(은평구 소재 사회복지단체인 ‘나눔의 둥지’ 급식비 지원 및 배식활동), 1부서 1가정(시설)돕기(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봉사활동 수행), 사랑의 집고치기(‘해비타트 서울 지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전통시장 가는 날, 예금보험제도 안내 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사회공헌 활동(다동·무교동 협약기관 공동 사회 공헌 프로그램), 현충원 봉사활동(묘비 닦기, 잡초 뽑기, 조화 교체 등), 김장 나누기, 연탄 나르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예산군 운곡리 사과마을에 대한 일손 돕기 활동으로 1사 1촌 지원사업(“농촌과 공감”),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 쉼터인 청계천 정화활동(“환경과 공감”)등도 전개하였다.

〈표 II-11〉 2014년 사회공헌 활동 내역

(2014년 12월말 기준)

구 분		활 동 명	횃수	참여인원	주 기
이웃과 공감	성금·물품기부	불우이웃돕기	15	-	연간
	장학금 지원	수도권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대상	1	20	매년
	장애우 결연	서울정진학교, 승가원 자원봉사	14	110	매월 첫째 목요일
	가족친화형 개별/그룹활동	동호회 활동 진도 어민 돕기 등 기타	9	11	수시
지역과 공감	무료 급식	은평구 나눔의 등지	12	111	매월 셋째 화요일
	1부서1가정돕기	평화모자원 등 24개 가정 및 시설 지원	168	660	매월
	사랑의 집고치기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 개선 (해비타트 서울지회, 국가보훈처와 연계)	5	90	분기
	전통시장지원	전통시장(통인시장)가는 날	49	1,008	매주 목요일
	다동·무교동 협약기관	헌혈, 지역 축제 지원 등	16	26	연간
	현 충 원	잡초 뽑기, 조화 교체 등	3	58	연간
	기 타	연탄 나르기 및 김장봉사 등	2	60	연간
농촌과 공감	1사 1촌 지원	자매결연 마을 일손 돕기 (운곡리 사과마을)	1	70	반기
환경과 공감	청계천 정화	청계광장에서 삼일교까지 정화	9	101	매월 넷째 금요일
	업사이클 캠페인	페이어폰 및 폐현수막 활용 등	1	21	수시
	식목 행사	강원도 춘천시 소재 식수행사	1	36	연간
합 계		-	306	2,3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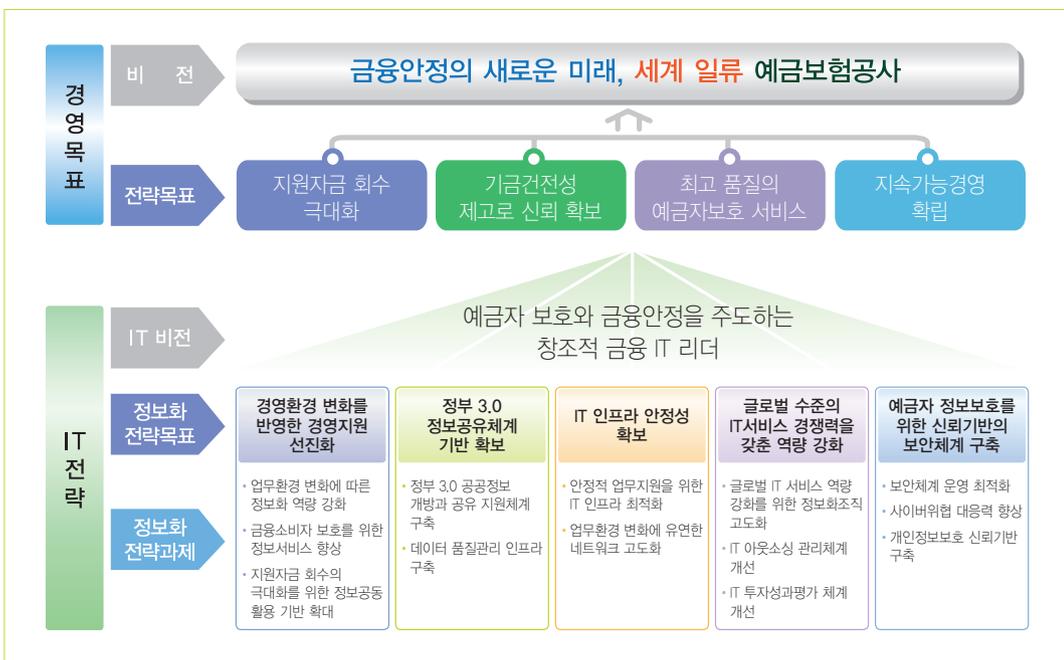


4. 중장기 정보화 계획 추진 현황

공사는 경영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대내외 환경을 종합 분석한 후 정보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말 제4차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2014~2016)을 수립하였으며, ‘예금자보호와 금융 안정을 주도하는 창조적 금융IT 리더’를 IT비전으로 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하여 5개 추진전략 및 13개 추진 전략과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실천해 가고 있다.

〈그림 11-4〉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2014~2016)



2014년도에는 제4차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의 1단계에 해당하는 정보화 전략과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영지원 선진화」라는 정보화 전략목표의 세부 전략과제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해 예금자를 포함한 대외 고객의 민원 처리 시 처리현황을 통합 관리하도록 VOC(고객의 소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크게 높였으며, 팀룸 개념을 도입하고 사내메신저를 구축하는 등 지식경영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직원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둘째, 「정부 3.0 정보공유체계 기반 확보」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3.0에 따라 공사 내 결재 문서 등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원문공개 시스템의 2015년 구축완료로 목표로 사전계획 수립 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외 금융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형을 최적화하고 예측력을 제고하는 등 리스크 감시모형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금융시장 상시감시 업무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예금자가 다양한 매체로 손쉽게 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IT인프라 안정성 확보」라는 정보화 전략목표에 따라 공사의 중요 자료를 보관하는 데이터 저장장치를 고성능 장비로 교체하고 용량을 대폭 늘려 IT서비스의 안정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고, 향후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등을 통해 IT서비스 안정성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넷째, 최근 자료유출과 관련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예금자 정보보호를 위한 신뢰기반의 보안체계 구축」이라는 정보화 전략목표를 세워 보안사고 ‘zero’을 달성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전사 망분리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득(2013년) 후 사후 심사를 우수하게 통과하여 공사 정보보안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보안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테스트 가상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 등 정보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한 결과 공사 설립 이래 보안사고 ‘zero’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II-12〉 제4차 정보화 1단계 (2014년) 세부 이행과제

정보화 전략 목표	1단계 (2014년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I.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영지원 선진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합민원관리 시스템 고도화	(2014년 11월)
	• 내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신지식경영 시스템 개선	(2014년 5월)
II. 정부 3.0 정보공유체계 기반 확보	•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2014년 11월)
	• 리스크 감시모형 시스템 개선	(2014년 11월)
III. IT인프라 안정성 확보 및 신뢰기반의 보안체계 구축	• 안정적 업무운영을 위한 저장장치 교체	(2014년 10월)
	•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망/인터넷망 시범분리	(2014년 11월)
	• 정보보안 관리체계 사후 심사	(2014년 10월)
	• 사이버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장비 추가 구축	(2014년 12월)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1.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제고

가. 주요 홍보 추진 실적

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개선과 공사의 역할·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전년도 홍보매체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홍보활동의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 금융정보 취약계층으로 분석된 20대, 50~60대 및 대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홍보 타겟별 관심이슈와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콘텐츠(지면광고 등)를 신규 제작하였으며 주부, 직장인, 노년층의 일반인 광고모델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예금자보호제도 및 공사에 대하여 친밀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면광고 제작 시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핵심정보(보호상품, 보호회사, 보호한도)를 시리즈 광고로 제작하였고, 국민들이 중요 정보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유발형 홍보’(지금 확인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등)를 실시하였다.

홍보매체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등 경영여건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케이블TV·라디오 광고를 집중 활용하였다. 케이블TV 및 라디오 광고의 경우 시청률 및 주시청(청취)층을 고려한 채널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전통매체인 신문·잡지와 더불어 KTX, 버스, 지하철 등 교통매체 및 LED 전자현수막, 옥외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후순위채권 비보호 사실 등도 적극 홍보하여 선의의 금융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금융정보 취약계층인 대학생, 주부, 노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전략 및 인쇄광고 부문에 대해 광고공모전을 주최하여 대학생들의 공사 홍보에 관한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부기자단을 새로 운영하여 주부의 입장에서 SNS 기사 작성 및 해당 기사의 확산을 유도하였다.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홍보물을 제공하였고, 노년층을 주타겟으로 하는 금융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예금자보호제도 및 공사에 대한 현장 인지도 조사 및 일대일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채널로써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를 활용하여 SNS 기자단 운영 및 SNS 이벤트를 연중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SNS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 및 공사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유도하였다. 또한, 최근 높은 모바일기기 이용률을 감안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표 III-1〉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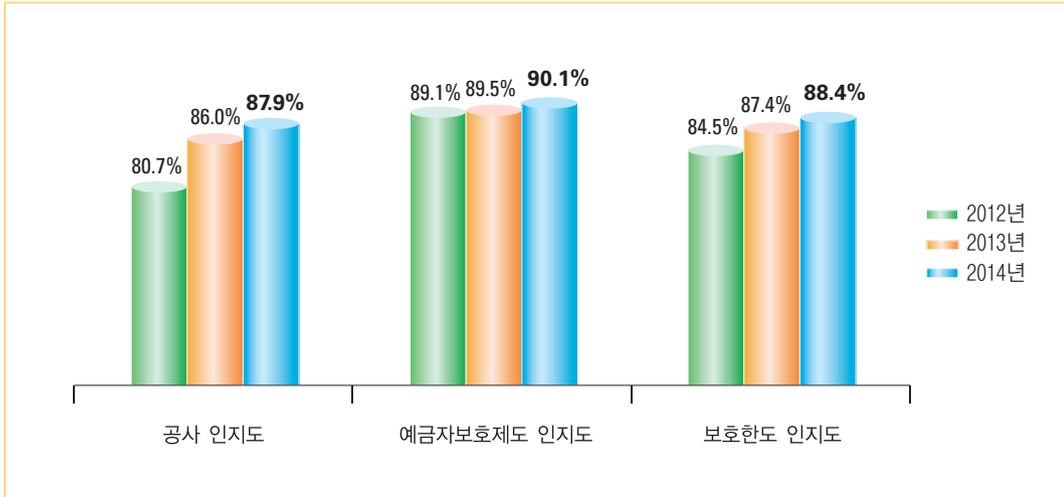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홍보 이미지			

나.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

공사는 매년 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 경제교육의 확대와 지속적인 공사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공사 및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도 ‘공사 인지도’는 87.9%로 전년대비 1.9%p 증가하였고,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는 90.1%로 전년대비 0.6%p,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인지도’가 88.4%로 전년대비 1.0%p 증가하였다.

〈표 Ⅲ-2〉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추이



2. 표시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안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 등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 예금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을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공사는 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에 대해 부보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표 Ⅲ-3〉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 점검 실적

(단위: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장 점검	472	639	617	683
1인당 점검 영업점 수	120.3	159.8	205.7	273.2
온라인 점검	-	-	-	1,683
소 계	472	639	617	2,366

공사는 부보금융기관과의 협업 및 소통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표시제도 이행 여부 점검을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부보금융기관의 표시제도 이행여부를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점검방식을 저축은행 및 은행에 본격 시행하여 점검지점 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여 금융정보의 가독성 및 접근성을 높여 금융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는 금융정보 취약계층인 외국인의 피해 예방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안내 자료를 기존 6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태국어, 베트남어)에 4개 외국어(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추가로 번역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배포·비치하도록 하였다.

3. 생활금융교육 실시

가.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

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 되어, 2010년부터 초등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전통시장 상인, 2013년에는 다문화가족 등으로 그 교육대상을 넓혀왔으며, 2014년에는 차세대 경제주체인 중·고등학생 등으로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매년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초등학교에 생활금융교육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신청을 받고,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생활금융교육 강사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 하여 용돈관리 및 예금보험제도 등의 내용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70회에 걸쳐 21,47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예금보험제도 안내 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2년 9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는 86회에 걸쳐 8,180명에 대하여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노인복지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기자재(노트북 컴퓨터 23대, 빔 프로젝터 6대)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노인복지관 전국대회, 전국노인 자원

봉사대축제 등)에 참여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안내하고 공사의 생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2011년 11월 시장경영진흥원(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상인대학 정규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103회에 걸쳐 41,320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통시장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기자재(노트북 컴퓨터 및 빔 프로젝터 20 SET)를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전국우수시장박람회, 상인대학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안내하고 공사의 생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13년 처음 시작한 생활금융교육은 2014년에는 13회에 걸쳐 367명에 대하여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학습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교육기자재(노트북 컴퓨터 24대)도 지원하였다.

공사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교육기부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 162회에 걸쳐 28,553명을 대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사가 2014년 한 해 동안 초등학생, 전통시장 상인, 노년층, 중·고등학생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금융교육 과정은 총 645회, 102,354명에 이르고 있다.

나. KDIC 생활금융교육센터 개소

생활금융교육은 교육 대상층이 다양화 되면서 교육기법 등의 품질 제고를 위해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공사는 2013년 10월 기존의 직접 방문교육 위주의 생활금융교육에서 교육 콘텐츠 R&D, 강사양성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KDIC 생활금융교육센터」를 개소하였다.

「KDIC 생활금융교육센터」의 개소로 인해 공사는 생활금융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였으며, 향후 동 생활금융교육센터를 통해 교재개발 및 연구, 교육 대상층 확대 등 생활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구할 예정이다.

다. 교육 대상층별 교재 개발

공사의 생활금융교육 대상층이 다양화됨에 따라 대상층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신규 교재 개발을 추진하였다. 기존 7종(시장상인용, 노년층용, 다문화가족용 초급, 다문화가족용 중급, 일반인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의 교재 외에 2014년에는 신규로 3종(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청소년 진로교육용)의 교재를 추가로 개발하였다.

〈표 III-4〉 2014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생	노년층	전통시장 상인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	교사·학부모	일반인	합 계
인원수	21,470	8,180	41,320	367	28,553	249	2,215	102,354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1. 경영관리 중 여신 고객 등에 대한 불편 해소

2011년부터 이루어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금자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여신 고객들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대출 상황과 관련된 혼란, 대출 만기 연장 중단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 등과 같은 민원이 공사에 접수되었다. 이에 공사는 고객의 범위를 예금자 뿐만 아니라 여신거래자까지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예금자보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표 III-5〉 여신고객 불편 해소 방안

사 업 명	주 요 내 용	기 대 효 과
대출채무자 안내 강화	채무자별 대출 잔액증명서 발송 및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상환 등 안내	연체 등을 방지하여 채무자 피해 예방
저금리 대출 안내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안내	금리 부담 완화
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 제공	만기도래 대출의 연장 대상, 조건 등을 제시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

공사는 대출채무자별로 대출 잔액증명서를 발송하고 경영관리 착수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상환 방법을 공지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으며, 고금리 대출자에게

는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였다. 또한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대출 연장 기간 등을 조정하도록 '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2. 예금보험금 등의 안정적 지급 및 서비스 강화

공사는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해 예금자 권익 보호 및 예금보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금데이터 복원 후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적극적인 예금자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무자들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여 데이터 검증 및 예금보험금 계산 등을 통해 2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금 추가 지급대상자 2.4만명(27억원)을 선별하였다. 이후 공사는 새로 산정된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예금보험금 지급대행지점의 창구담당자에게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응대반을 구성하여 예금자 문의에 대응하였다.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예금보험금 안내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확보하여 주소보정 후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서울 중구청의 협조를 통해 상속인 주소정보를 입수하여 안내하였다.

한편 공사는 상속인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구축하여 상속인에게 휴면보험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총 6.5만명의 고객이 동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예금보험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예금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지급대행지점 위치 안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477개의 지급대행지점의 위치 안내를 시행하였고, 예금보험금 지급시 기존에 징구하던 '채권양도증서' 징구를 폐지하여 예금자의 서류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금융거래 중단기간 최소화

공사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여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지 않고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정리절차를 진행하여 금융거래 중단 없이 제3자 또는 공사 보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예금자 등 해당 저축은행 거래자들의 불편과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하여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와 함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고, 익영업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2013년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잠재인수자 물색 등의 노력을 통해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한 기존의 정리방식이 아니라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함으로써 예금자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을 관리·매각하여야 하는 공사의 부담을 줄이고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기에 종결하는 정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해솔저축은행을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차질 없이 정리하였다.

〈표 III-6〉 2014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부 실 저축은행	정리방식	영업정지일 (=계약이전일)	영업재개일	영업정지기간
해 솔	제3자 계약이전	2014. 5. 2	2014. 5. 7	2일(익영업일)

4. 파산배당금 지급 노력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며 잔류 자산을 환가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한 후 파산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공사는 파산절차 장기화에 따른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에 의거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공사가 매입하고, 향후 예상되는 파산배당률을 고려하여 초과 금액의 일부를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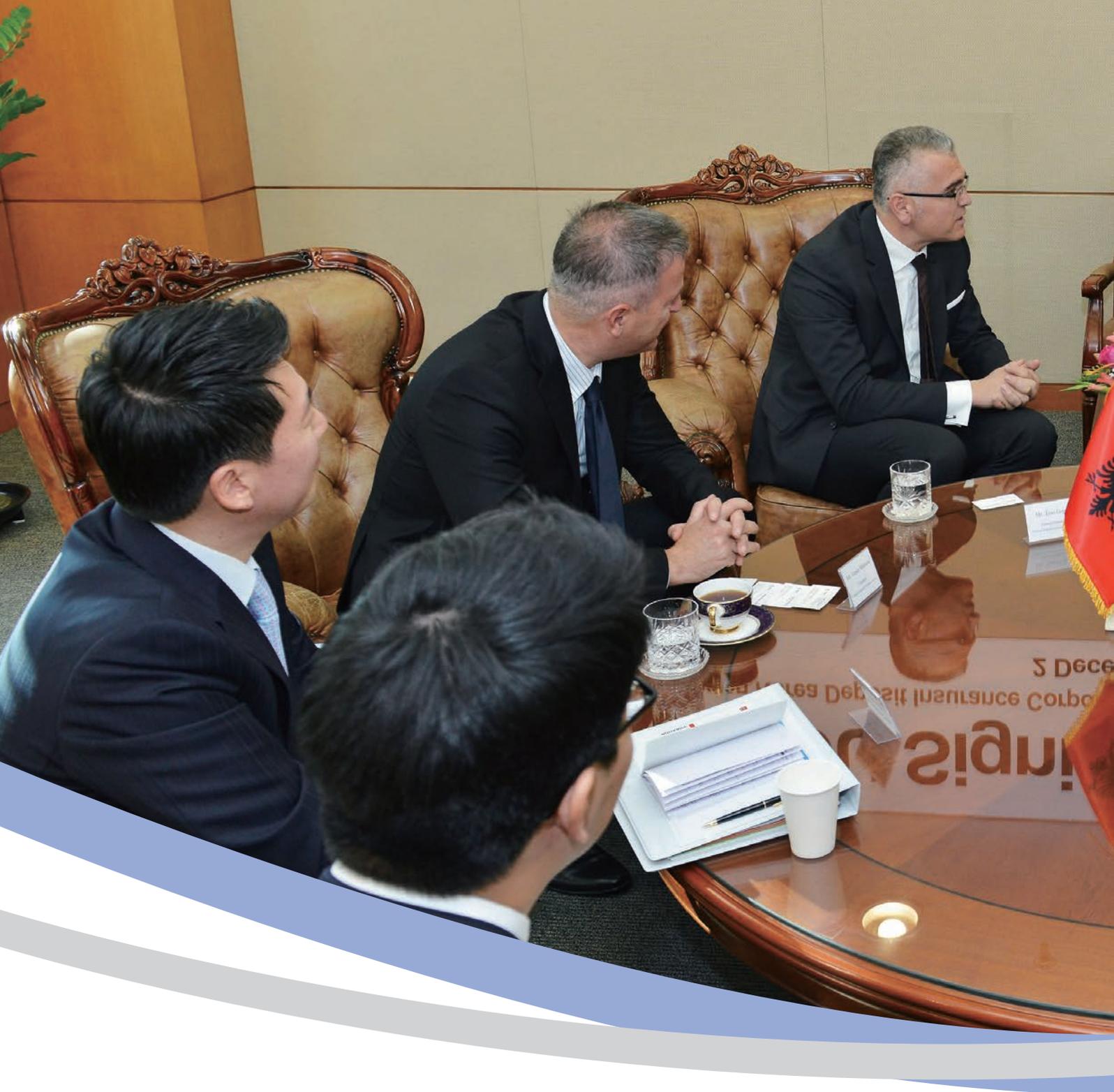
또한, 2014년까지 공사가 매입한 예금 채권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미리 지급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한 7개 저축은행의 2만 8천여명의 예금자들에게 개산지급금 정산금으로 약 297억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개산지급금 및 동 정산금 지급을 통해 조기에 파산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개산지급금 및 동 정산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금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파산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배당금 수령 통지가 불가능한 소재 불명 파산채권자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파산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2005년 8월부터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신문을 통한 광고 홍보활동 및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통해 미수령 배당금 보유 파산채권자에 대한 주소 보정작업을 한 후 새로 파악된 주소지로 배당금 수령 통지를 하고 있으며, 파산채권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미수령 배당금 안내서비스'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4장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1.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공사는 부실금융기관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었으나, 그 전제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했다. 이에 공사는 2014년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제21조의3제1항). 나아가 공사는 저축은행 사태 등과 같이 최근 발생한 부실금융 사태에 대한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필요가 있고, 점차 교묘해지는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23일까지 유효했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권한의 일몰기한을 2019년 3월 23일까지 5년 연장하였다(법률 제10691호 부칙 제2조).

또한, 공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검사 또는 단독조사 후 부보금융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검사·조사를 받은 부보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 규제와 선량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2014년 5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조사 및 공동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제21조제6항 및 제8항). 나아가, 현행법상 벌금형이 경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감에 따라 벌금형을 현실화 하고자 금융거래정보 등의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임직원의 업무상 취득 비밀 등의 누설 금지, 금융기관에 요청한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자료제출 금지,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하였다(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공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상품(은행 예금, 금리연동형·이율보증형 보험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 등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자가 보호대상 적립금 등이 예치된 부보금융회사에 다른 부보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부보예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호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사는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부보예금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1.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전망 체계 조사연구

공사는 선진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외부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IV-1〉 2014년 주요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주 제	제 목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국 예금보험제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적기시정조치 개선안 및 시사점 • EU의 단일은행감독 및 단일정리체계 설립(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유럽연합(EU)의 '예금보호지침'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영국의 금융소비자 손실보상제도 • 영국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문업 개편 동향 및 투자자보호제도 현황 • 中 3중전화 이후, 중국의 금융개혁 주요 내용 •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안 • 일본예금보험기구(DICJ)의 공적자금 관리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경제현안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의 원인, 결과 및 정책적 대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FSB의 '금융회사 정리제도 핵심요소' 주요 개선내용 및 시사점 • ETF의 잠재적 금융안정 위협요인 분석 • Shadow Banking 관련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예금보험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출된 금융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EU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감독규제체계 및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는 글로벌 정리체계 개혁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국내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등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 및 금융기관 정리제도 등 금융안정체계와 관련한 학술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저명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 연구 결과물 공유 노력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금융안정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에 수록·발간하여 정책당국, 유관기관, 학계, 언론 등에 배포하였다. 공사는 이와 같은 발간 사업 및 제공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V-2〉 2014년 주요 발간물

제 목	게 재 논 문
<p>금융안정연구 (제15권 1, 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정리체계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대형복합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실저축은행의 PF대출채권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SRISK 모형을 이용한 은행부문 시스템적 리스크 분석: 데이터빈도별 성과 분석 • 신용등급 보유가 주식수익률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동적 무리행동과 제한적 합리성을 갖는 경제주체의 자산 가격 동역학 • 예금보험 문헌연구: 제도개선에서의 함의 •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대출 군집행동 •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 제고 방안에 관한 고찰 • 횡령발생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유형별 매매패턴 • 거래승수 인상이 KOSPI 200 옵션시장의 가격발견기능에 미치는 효과
<p>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과제 • 부보예금우선변제 전환에 따른 차등보험료율과 유인부합적 자기자본규제 • 은행의 퇴출가능성 증가와 부보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 은행규모와 리스크에 따른 Dodd-Frank법 도입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예금보험기구의 효율적 검사·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그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 미 FDIC와 IADI 예금보험제도원칙의 시사점을 통해 • 파산재단 채무조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1. IADI 등 국제기구 내 주도적인 활동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가.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내외 활동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금융안전망의 중심축으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각국 예금보험기구의 국제협의체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IADI가 제정한 “예금보험핵심준칙 및 평가기준(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and Methodology)”은 2011년 2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에 의해 주요 글로벌 금융규범(12 Key Standards for Sound Financial Systems)의 하나로 채택됨에 따라 IADI는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2013년 2월 IADI는 FSB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핵심준칙’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공사는 주요국 예금보험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정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며, 2014년 11월 개정 ‘예금보험핵심준칙’이 마련되었다.

공사는 IADI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으로서 그리고 2012년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 수상 기구로서 IADI의 주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권역의 부실금융기관을 다수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아,

공사는 IADI 산하 「통합예금보험제도연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grated Protection Scheme)」 의장직을 맡아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2015년에는 연구보고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IADI는 계약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P&A) 방식을 이용한 정리 경험이 많은 공사에 「계약이전방식 연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P&A)」의 의장직 수행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는 동 소위원회의 발족을 주도하여 의장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나. 2014년 IADI-KDIC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공사는 201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IADI와 공동으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IADI-KDIC International Seminar for Expertise Sharing on Deposit Insurance

동 국제세미나에는 IADI의 사무총장인 Gail Verley, IADI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장 이자 일본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인 Hiroyuki Obata, 외에 스위스, 필리핀, 몽골, 태국, 브루나이 예금보험공사 사장,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간부 등 22개국 금융안전망 기구 임원 및 고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금번 국제 세미나의 주제는 ‘후발국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효과적인 전달방법 모색 (Cross-border Cooperation for Capacity Building and Effective Delivery of Services)’으로 공사와 유사한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 예보기구와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상호학습의 장을 제공하였다.

공사는 동 행사를 통하여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최초로 지식공유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국제기구를 한 자리에 모아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식공유 선도기관으로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 IADI-KDIC 국제세미나 개최 장면 〉

2.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확대

가. MOU 체결과 인력 교류를 통한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과 예금보험제도 현안에 대한 정보 및 인력 교류를 목적으로 해외 예금보험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 MOU를 체결하여 왔다.

공사는 2014년에도 영국, 필리핀, 몽골, 알바니아, 라오스 예금보험기구와 신규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대만, 네팔 예금보험기구와는 기존의 MOU를 갱신하였다.

공사는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와 2014년 3월 31일에 MOU를 체결하였다.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와의 MOU는 2006년 양 기관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비공식 협력의향서(Letter of Informal Understanding)를 교환한 이후 지속되어 온 우호관계를 공식화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체결한 것이며, 공사의 입장에서는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와의 MOU가 서구 금융선진국 예금보험기구와 최초로 체결하는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공사는 MOU 체결식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영국의 금융개혁 조치와 예금보험제도 강화 조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와의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예금보험공사(2014년 7월 23일), 몽골 예금보험공사(2014년 8월 13일), 알바니아 예금보험원(2014년 12월 2일) 및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2014년 12월 2일)과 MOU를 체결하였다. MOU는 양 기관간 정기회의, 정책 자문 및 정보 제공,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는 2003년 대만 예금보험공사와 최초로 체결한 MOU를 2014년 3월 11일에 갱신하였으며, 2011년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와 처음 체결한 MOU는 2014년 12월 2일에 갱신하였다.

또한 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의 요청으로 2014년 3월에는 공사 직원을 탄자니아에 6개월간 파견하였고, 몽골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2014년 8월 공사 직원을 몽골에 1년간 파견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2014년 10월에는 공사 예금보험금 지급, IT 시스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에 대한 공사의 운영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밖에도 2014년 12월에는 MOU에 따라 일본 예금보험공사 직원 2명을 수견하여 일본 예금보험제도, 부실책임추궁체계 및 최근 부실금융기관 정리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였다.

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 추진 강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개발도상국 등 해외 국가들로부터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려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 공사 내부에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금보험제도 도입 추진 또는 선진화 하려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 정책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2014년에도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요에 맞추어 예금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을 전달하는 국제 워크숍과 연수를 실시하였다. 2월에는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의 요청을 받아 중앙은행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사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발표하였고, 3월에는 베트남 정부 및 금융당국을 초청하여 예금보험제도, 공사의 기능, 최근 현안 및 대응방안을 설명하였다. 5월에는 일본, 대만, 라오스, 몽골, 우크라이나, 태국, 터키 등 7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13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및 회수, 리스크 관리 등 선진적인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소개하였다. 6월에는 「한·미안마 현지 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은행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온두라스 금융보험위원장 등 온두라스 사절단을 수견하였으며, 11월에는 미얀마 국영보험회사 임직원 및 재무부 사무관을 수견하여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였다.



〈 해외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초청 프로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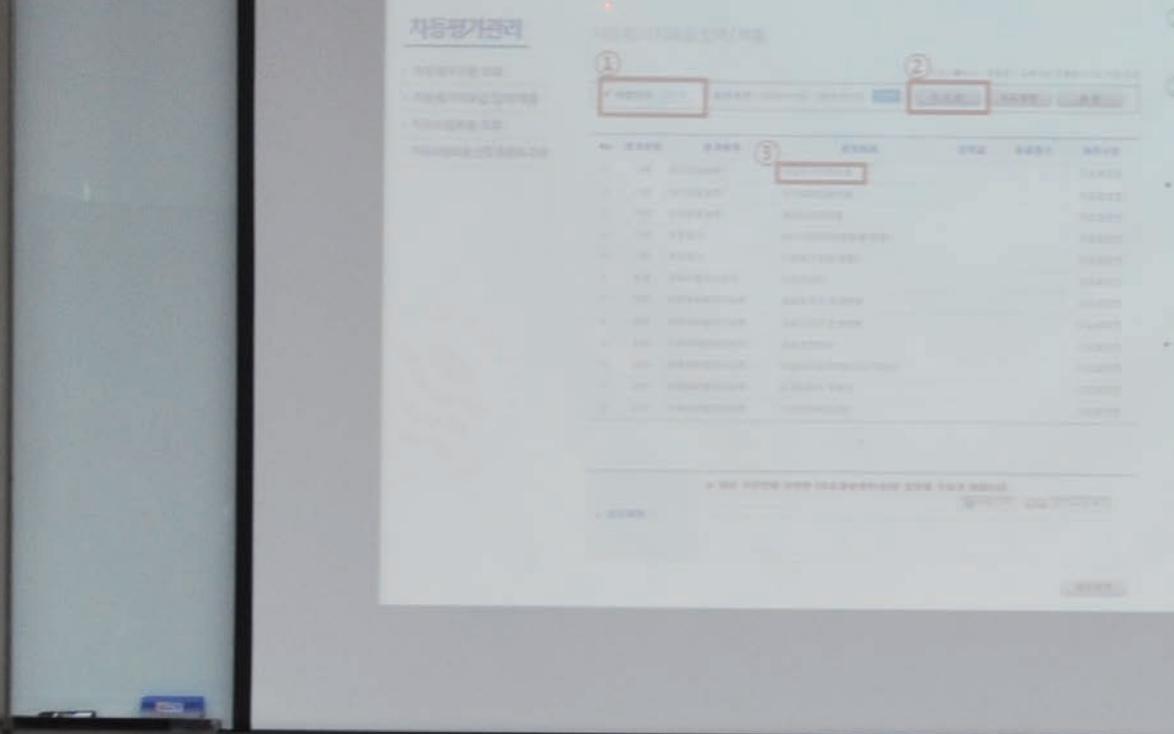
〈표 IV-3〉 2014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실적

국 가	대상기관	일 자	주 요 내 용
라 오 스	예금자보호기금, 중앙은행	2월	•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 및 중앙은행 등 임직원 대상 현지 세미나 실시
베 트 남	정부, 금융당국	3월	• 베트남 정부 및 금융당국 공사 방문
일본, 대만, 라오스 몽골, 우크라이나, 태국, 터키	예금보험기구	5월	• 해외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초청 프로그램 실시
미 안 마	재무부, 중앙은행	6월	• 한·미안마 금융포럼 참석
온두라스	금융보험위원회, 중앙은행	10월	• 온두라스 사절단 공사 내방
미 안 마	국영보험회사, 재무부	11월	• 미안마 보험감독위원회 초청연수
필리핀, 탄자니아	예금보험기구	7월~12월	• KSP 시스템 컨설팅(예금보험 IT 지원) 사업

또한, 공사는 정부의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과 연계해왔다. 지금까지 동 해외공유 사업은 법 제정,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정책자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으나, 2014년에는 정부의 탄자니아·필리핀 「예금보험시스템 구축 지원」 KSP 시스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기존 정책자문 사업 이외의 실행 가능한 IT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IT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IT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었다.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평가
지표별 실적값 조회
각 지표명을 클릭하여 평가지표 세부
항목값에서 지표항목값 확인 및 입력

기본평가지표(분점산용평가등급 제외) 및
보편평가 재무위험관리능력지표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유중인 업무보고서를 바
탕으로 기초값을 제공하며, 이를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을 시 수정가능

기본평가지표 중 분점산용평가등급 및 보
편평가 비재무위험관리능력지표의 경우,
해당값을 직접입력



제5장

리스크 관리

-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의 성공적 시행
- 제3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1. 리스크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가. 리스크 감시 기반 강화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기 위하여 리스크 감시모형을 통해 부보금융기관의 현재 재무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변동상황 등을 예측하고 있다. 동 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수준을 차등화 함으로써 상시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공사는 동 리스크 감시모형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권역별 평가지표 임계치 및 가중치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왔다. 2014년 중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Basel III 도입, RBC 제도 도입, NCR 체계 개선 등 주요 금융권역별 규제비율 변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를 모형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리스크 감시모형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였다. 리스크 감시모형 개선은 활용 데이터 기간의 확장, IMF의 금융건전성 지표 및 차등모형에서 사용한 지표 등 유의성 검증 대상 지표의 확대 등을 통하여 모형의 정합성 및 설명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모형결과 해석기능 개선, 데이터 일괄입력 기능 추가, 부보금융기관별 비교 검토 기능 추가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한 모형의 활용도 제고도 병행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부실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동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연구 및 장단점 분석 결과, IMF의 「재무제표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이 컨설팅의 권고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공사는 동 컨설팅 결과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 중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하여 부실징후 조기발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조사·공동검사 대상 저축은행의 여신 상시 감시 자료 공유에 합의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해당 저축은행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및 조사·공동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공사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의 기반 강화 및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9월 이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금융정보를 상호 공유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기관 간 논의를 거쳐 정보공유 방식을 변경하여 공유 대상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업무보고서 중복 제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고,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고히 하였다.

나. 리스크 감시 역량 강화

공사는 리스크 감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감시모형 등을 활용한 분석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직원들의 거시경제 환경 분석 및 리스크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의 국내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공동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사내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부보금융기관 경영정보시스템(FIAS), 조사·공동검사 관리시스템(EIMS), 리스크 감시모형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공사 내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비재무정보 집중 수집일」로 지정하여 비재무정보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였으며, 각 금융권역에 특화된 외부 금융정보 활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역량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 전문성 제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조사역량평가 지표(전문성, 보고서 품질, 조사만족도)를 개발하였다. 2개 지표(전문성, 보고서 품질)는 전·현직 검사업무 전문가, 회계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개 지표(조사만족도)는 조사를 실시한 저축은행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평점은 91.4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개최한 「저축은행 조사업무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학계, 업계 및 금융감독 분야 외부전문가들은 공사의 조사역량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2. 조사 및 공동검사 등 현장 확인 실시

가. 리스크 현장 확인 실시

공사는 리스크 감시모형 등을 통해서 인지된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감축을 위하여 「예금자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동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단독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진 등과의 면담 등 리스크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은행, 보험, 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 총 9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공사는 검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공동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공동검사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 공동검사 유관기관과 공동검사 관련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검사 워크숍도 실시하였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적기에 단독조사에 착수하였다. 단독조사 대상 선정 시에는 금융감독원 검사와 공사의 단독 조사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의하였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상 부실우려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중 공동검사 실시 대상, 매각 등 정리절차 추진 대상 및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을 제외하고 단독조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사계획을 최적화한 후 단독조사를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17개 저축은행을 단독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징구하여 사전 분석을 실시한 이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공사는 현장조사 결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거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 감독당국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에 적극 대처하였다.

또한, 공사의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저축은행 경영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저축은행별 리스크 요인 및 특성을 감안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향후 저축은행의 경영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014년 5월에는 공사의 단독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과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 시정조치 요청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치 결과 및 조치 대상 부보금융기관의 이행 내역을 공사에 송부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표 V-1〉 「예금자보호법」 개정 내용

법	신 설 조 문
「예금자 보호법」	제21조(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⑥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5.28〉 ⑧ 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5.28〉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공사는 총 17개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120건의 시정조치를 금융감독원 앞으로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의 단독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이 담보됨에 따라,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V-2〉 시정조치 요청권 부여 후 조사업무 흐름도 변화



한편, 2014년 7월에는 금융감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사와 금융감독원과의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형·계열 저축은행의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공사와 금융감독원이 단일 검사반 체제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대상 부보금융기관의 수검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공사는 2014년 중 실시한 공동검사에서 금융감독원과 분담하여 여신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공동검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분리통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3. 상시 감시 기능 활성화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상시감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평상시 상시감시협의회 소집의 필요성이 낮아져 보험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2014년에 개정함으로써 상시감시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4년 중 총 22개의 안건을 월별로 심의함으로써 유관 부서들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도모하는 한편, 연말에는 3건의 우수 안건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4. 시장친화적 리스크 감시

가. 시장전문가들과의 교류 강화

공사는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장참가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유도하고자, 2004년부터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誌”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금융리스크리뷰誌” 발간 10주년을 맞이하여 외부전문가의 원고를 강화한 특집호를 발간하였고 겨울호부터는 공사 내 연구위원의 원고를 추가 게재함으로써 게재 원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자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표 V-3〉 2014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비 고	주 요 내 용
2014년 봄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과 내부통제 개선 방안 • Shadow Banking 관련 글로벌 규제논의 현황
2014년 여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지정 및 금융규제방향에 대한 논의 • 최근 손해보험사 자산운용의 현황 및 특징
2014년 가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 조건부자본증권의 도입과 발생사례 분석
2014년 겨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소유·지배구조의 특징과 경영성과 • 예금보험의 차등보험료율제 도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와 함께, 2014년에는 부보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참여하여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하는 ‘청계금융포럼’을 10회 개최하였고, 부보금융기관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는 ‘상시감시포럼’은 4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기법 등에 대한 리스크 감시 실무자의 금융업 실무지식을 함양하였다.

한편, 공사는 2011년부터 금융 관련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공사 직원의 대학교 특강, 그리고 학계 전문가의 초청 강연으로 구성된 ‘KDIC-학계협력 프로그램’(KDIC Exchange Program with Finance Academy; KEPA)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총 27회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학계와의 소통을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미비점이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부보금융기관과의 교류 강화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상시감시를 통하여 생산된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정보를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제공하였으며, 단독조사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보금융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였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리스크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저축은행업권 및 타 금융업권의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저축은행업권 실정에 맞는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영 여건상 임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4년 중 총 16회의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축은행과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공사는 앞으로도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 업무와 더불어 양질의 교육지원서비스와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리스크 감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지원서비스 제공 장면 〉

제 2 절

차등보험료율제의 성공적 시행

1. 차등보험료율제의 의의 및 개요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여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전체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차등평가는 평가의 기대효과, 예금보험료 납부규모, 평가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크게 (1) 차등모형평가, (2)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3)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된다. 이 중 차등모형평가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나타내는 ‘위기대응능력’,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건전성관리능력’, 수익성을 나타내는 ‘손실회복능력’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보완평가부문은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과 금융당국의 제재현황 등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4〉 차등평가의 구분

구 분	대 상	평 가 방 법	적 용 요 율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및 등급외 적용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보금융기관	차등모형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요율 적용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소액보험료 납부기관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규정에서 미리 정한 요율 적용
등급외 적용 평가	부실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중인 기관 등		규정에서 미리 정한 할증 요율 적용

또한,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으로 인한 부보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프트랜딩 기간을 설정하고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V-5〉 등급별 적용 요율(금융권역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등 급	소프트랜딩 기간		본격 가동 기간		
	2014~2015년	2016년	2017~2018년	2019~2020년	2021년~
1등급(할인)	△5%	△5%	△5%	△7%	△10%
2등급(표준)	0%	0%	0%	0%	0%
3등급(할증)	+1%	+2.5%	+5%	+7%	+10%

* 은행(0.08%), 보험·금융투자(0.15%), 저축은행(0.40%)

2.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차등평가 최초 실시

공사는 2014년 평가대상 314개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차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차등보험료율제가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등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는 등 차등보험료율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 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차등평가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부단한 제도개선

노력과 「차등보험료율산정시스템(RBPS)」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다.

〈표 V-6〉 금융권역별 설명회 개최 실적

구 분	은 행	생 보	손 보	금융투자	저축은행	합 계
회 수	8회	1회	1회	1회	6회	17회

3. 차등보험료율제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의견수렴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 비밀유지 대상정보 확대 및 부실금융기관 인수 등과 관련된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 4월 및 5월에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모든 부보금융기관이 인수 후 3년간 할증보험료율(3등급)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보험료율(2등급)을 적용받거나 차등모형평가를 적용 받아 평가결과에 따라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설된 부보금융기관도 차등모형평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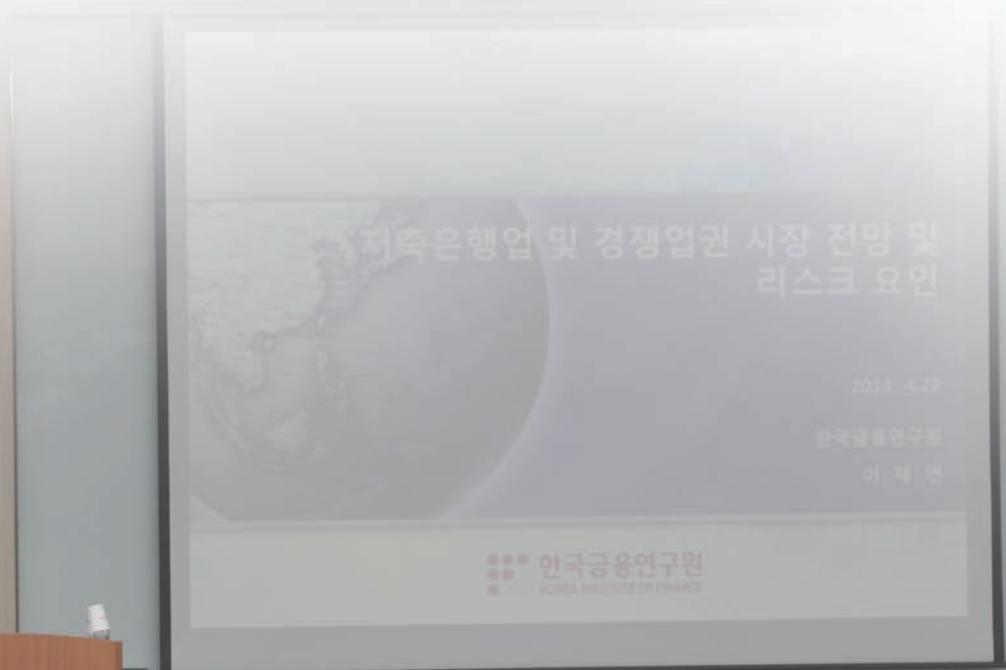
한편, 차등평가 결과 및 평가기준 등이 유출될 경우 부보금융기관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공사는 2014년 5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운영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동 방안에 따라 내부통제절차 이행 상황을 매 반기마다 자체 점검하였고, 그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등평가 결과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8월 및 11월에 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2월에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차등평가 결과를 교차검증 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차등보험료율제에 대한 수용도 및 안착 수준 등을 파악하여 향후 동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부보금융기관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인지도, 수용도 및 공사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차등보험료율제 종합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보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제에 대한 인지도와 건전경영 의지 및 공사의 노력도 부문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차등보험료율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G7 국가 중 5개 선진국이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등보험료율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1. MOU 체결 및 점검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 해당 금융기관에 재무비율 목표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왔다. 2002년 4월 이후 제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이 매각 또는 합병됨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기관과의 MOU를 해지(광주·경남은행 2014.10.10, 우리금융지주 2014.11.3)하였으며, 2014년말 현재는 우리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및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금융기관과의 MOU를 관리하고 있다.



2014년 중 공사는 MOU 체결 금융기관의 2013년도 4/4분기부터 2014년도 3/4분기까지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이 2013년도 연간 MOU 재무비율 목표에 일부 미달하였다.

2013년도 연간 MOU 재무비율 목표를 일부 미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사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관리규정'에 따른 조치(기관)를 취하였는바,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그룹차원의 수익성 제고, 비용 절감 및 자산건전성 제고 방안을,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대손비용 감축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자산건전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광주은행, 경남은행의 경우 전반적인 재무비율의 달성수준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공사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비율 목표미달에 따른 조치를 면제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MOU 체결 금융기관의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표 V-7>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추가·수정 내역

(2014년 12월말 현재)

금융기관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 가	수 정	
우리금융지주	2001. 7. 2	2003. 1.22 2005. 3.23		2014.11. 3 (우리은행과 합병)
우리은행 (舊한빛은행)	1999. 1.22 ¹⁾ (2000.12.30)	2007. 3.28 2009. 3.30 2011. 3.30	2004. 9.22 2007.12.26 2010. 3.23	-
광주은행	2000.12.30	2012. 3.29 2013. 4.24		2014.10.10 (JB 금융지주 앞 매각)
경남은행	2000.12.30	2014. 3.25		2014. 10.10 (BS 금융지주 앞 매각)
수 협 신용사업부문	2001. 4.25	2005. 3.23 2007. 3.28 2009. 3.30 2011. 3.30 2012. 3.29 2013. 4.24 2014. 3.25	2003. 2.12 2003. 7. 9 2005.12.21 2007.12.26 2010. 3.23	-
서울보증보험	2000. 4.12 ¹⁾ (2001. 6. 9)	2005. 6.22 2007. 7.18 2009. 6.10 2011. 6. 1 2012. 6.12 2013. 6.26	2002. 7.10 2006. 6.21 2007.12.26	-
제주은행	2000.12.30	-	-	2002. 4.29 (신한지주 앞 매각)
서울은행	2000.12.30	-	2001. 6.29	2002.12. 1 (하나은행 앞 매각)
조흥은행	1999.11.12 ¹⁾ (2002. 1.31)	-	-	2003. 8.19 (신한지주 앞 매각)
대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5.31 (하나은행 앞 매각)
한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3.31 (舊동원지주 앞 매각)
대한생명	2000. 4.12 ¹⁾ (2001. 9. 5)	-	-	2002.12.12 (한화컨소시엄 앞 매각)
우리카드 (舊평화은행)	2000. 6. 7 ¹⁾ (2000.12.30)	2003. 6. 4	2002. 3.25	2004. 3.31 (우리은행과 합병)
우리증권	2000.12. 9	-	2001. 6.29	2003. 8. 1 (우리은행과 합병)

주 : 1) 해당 기관, 공사,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 3자간 약정 체결



2. MOU 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 합리적인 MOU 목표 부여

공사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MOU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011년도부터 변경된 목표 부여방식을 적용하여 2014년도 MOU 재무비율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부여하였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순이자마진 하락효과 및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에 따른 재무효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나. MOU 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

공사는 MOU 이행실적 점검시 MOU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 이외에도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MOU 점검결과 통보시 이에 대한 주의환기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MOU 체결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사후적인 MOU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2013년에 이어 2014년 12월에도 MOU 업무 관련 실무자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사와 MOU 체결 금융기관간 정보공유 및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MOU 관리업무의 질적 제고 및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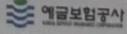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사회복지법인이랜드복지재단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저축은행 파산재단 관련 PF사업장에 대한 2차 투자설명회

2014년 4월 16일(공사 2층 세미나실), 17일(부산역 104호 회의실) 14:00~16:00  예금보험공사

유의 사항

- 본 투자설명회는 저축은행 파산재단 관련 PF사업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파산재단 관련 PF사업장에 대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유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 투자설명회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투자설명회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향후 일정 및 Contact Point

- 본 자료는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투자설명회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일정	주요 내용
2014. 10. 17	1차 투자설명회
2014. 11. 14	2차 투자설명회(본 행사)
2014. 11. 21	3차 투자설명회

연락처	연락처
예금보험공사 PF사업장 담당자	부산재단 PF사업장 담당자
02-709-1800	010-9210-1234
이동희@kfc.or.kr	010-9210-1234
이동희@kfc.or.kr	이동희@kfc.or.kr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6장

부실금융기관 정리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제2절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가교저축은행 매각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별자산의 관리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1.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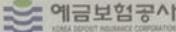
2011년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2013년도 및 2014년도에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중 1개 저축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사가 영업 정지되었고, 이에 공사는 관리인 및 관리 보조인을 파견하여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에 영업 정지된 2개 부실금융기관은 모두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되어 현재는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해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영업 정지된 6개 부실금융기관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이 설립되었다. 한편, 2014년에 영업 정지된 2개 부실금융기관 중 해솔저축은행은 2014년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이 설립되었다. 2014년 1월 영업 정지된 한맥투자증권은 공사가 관리인 및 관리 보조인을 파견하여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맥투자증권의 투자자예탁자산은 계약이전 방식으로 이전되었으며 2015년 중 파산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표 VI-1〉 2013년 이후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부실금융기관명	영업정지일	현재상태(인수자)	계약이전일	파산선고일
서울저축은행	2013. 2.15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주저축은행)	2013. 2.15	2013. 9.26
영남저축은행	2013. 2.15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술저축은행)	2013. 2.15	2013. 9.26
신라저축은행	2013. 4.12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신저축은행)	2013. 4.12	2013.10.29
그린손해보험	2013. 5. 3	제3자 계약이전 (MG손해보험)	2013. 5. 3	2013.11. 1
스마일저축은행	2013.11. 1	제3자 계약이전 (오에스비 저축은행)	2013.11. 1	2014. 4.29
한울저축은행	2013.12.27	제3자 계약이전 (폐퍼저축은행)	2013.12.27	2014. 7. 1
해솔저축은행	2014. 5. 2	제3자 계약이전 (웰컴저축은행)	2014. 5. 2	2014.10.21
한맥투자증권	2014. 1.15	투자자에탁자산 계약이전 (아이엠투자증권)	2014.12.26	-

에스엠엔파트너스제일차(유)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아이엠투자증권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식

| 일시 | 2014년 10월 15일(수) |  메리츠금융공사
MERITZ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



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체계적 경영관리

공사는 경영관리 인력 파견 및 업무 지원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체계적 경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경영관리 파견 인력이 해당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업무참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분기별로 관리인·관리 보조인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과의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경영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경영관리 부실금융기관별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경영관리 파견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4년에 부실화된 2개 부실금융기관에는 자산규모 및 지점 개수에 근거한 인력 배치 기준을 감안하여 관리인 2명과 관리 보조인 14명을 파견하였다. 동 파견 인력에는 기간제 검사역 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일반 은행권 및 공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퇴직한 금융전문가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에 숙련되어 있어 경영관리 업무가 신속히 안정화되는 데 기여를 하였다.

〈표 VI-2〉 2014년 부실금융기관별 경영관리 인력 파견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부실금융기관명	공사 내부 인력	기간제 검사역	합 계
해솔저축은행	10	3	13
한맥투자증권	3	-	3
합 계 (2개사)	13	3	16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직후 집중되는 전화문의로 인해 저축은행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저축은행에 민원 전담조직인 「고객응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화불통으로 인한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제2절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가교저축은행 매각

1. 부실저축은행의 신속한 정리

공사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여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하고 월요일에 인수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금자 및 여신거래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공사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으로 정리 시 신속한 정리를 위해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로 인해 공사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스마일저축은행부터는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하여 예금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의 매각·관리 부담을 없애고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조기에 종결하는 정리체계를 정착시켰다.

공사는 2013년 10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해솔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스마일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추진하여 2014년 5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 계약이전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4년 8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이전을 위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정리절차를 진행 중이다.

〈표 VI-3〉 2014년 부실저축은행 정리(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

부실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결정일	계약이전일 (=영업정지일)	인수금융기관
해솔	2013.10.10	2014. 5. 2	웰컴저축은행
골든브릿지	2014. 8. 2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편, 공사는 ‘영업 중 제3자 정리방식’의 정착 등의 제도 개선 외에도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산하에 「계약이전방식 연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P&A)」 설립을 추진하는 등 IADI 차원의 국제 공동조사 연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IADI는 계약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P&A) 방식을 이용한 정리 경험이 많은 공사에 「계약이전방식 연구소위원회(Subcommittee on P&A)」의 의장직 수행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는 동 소위원회의 발족을 주도하여 의장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2. 가교저축은행의 효율적 매각

저축은행업권의 장기간에 걸친 실적 부진과 저축은행 매물을 찾는 수요 부족 등으로 부실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활용한 가교저축은행의 시장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사는 가교저축은행 매각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가교저축은행 매각설명회를 개최하여 저축은행별 주요현황 및 투자매력도를 안내함으로써 인수의향자의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가교저축은행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구조적인 이익을 시현한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20% 수준까지 유상감자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순자산 규모를 축소하여 인수자의 인수자금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인수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몰취 관련 귀책사유를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및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여 계약금 관련 위험요인을 완화하였으며,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경우 인수의향서 제출 이전이라도 저축은행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를 사전 제공하는 등 매각 원활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각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13년말 현재 공사가 보유한 예쓰·예나래·예성·예주·예신저축은행 등 5개 가교저축은행 지분 모두를 2014년 3월~7월 중 성공적으로 매각 완료하였다. 가교저축은행의 매각을 끝으로 2011년 이후 추진되어온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가교저축은행 매각으로 인한 지원자금 회수를 통해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 부채 감축에도 기여하였다.

〈표 VI-4〉 2014년 가교저축은행 매각 현황

가교저축은행	설립일	지분 매각일	인수자
예 쓰	2009. 3.19	2014. 3. 7	삼호산업
예 나 래	2010. 3.19	2014. 7. 3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98%),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2%)
예 성	2012.12.21	2014. 4.21	한국투자금융지주
예 주	2013. 2. 6	2014. 7. 3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98%),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2%)
예 신	2013. 2. 6	2014. 4.30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별자산의 관리

1. 특별자산 현황

가. 개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2011년 이후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받음에 따라 이들의 자산이 대거 특별자산으로 편입되어 공사는 2014년말 현재 관련 대출채권 기준 총 12조8,564억원 규모의 특별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별자산은 대출 취급과정에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차명으로 SPC를 설립하고 이들 SPC에 대출을 실행하여 국내외에서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산으로 물건 상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인의 법률분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 및 고가의 외제차량 등 종류도 다양하여 이들 자산을 고유한 특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자산가치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특별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에 특별자산 관리 전담부서(특수자산부) 설치하였으며 2014년 말 현재 2개 부서(청산회수 1부, 청산회수 2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VI-5〉 특별자산 유형별 관련 대출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개)

사 업 유 형	대 출 채 권		투자자산 ¹⁾ (투자액, B)	합 계 (A+B)
	건수(사업장)	금액(A)		
아파트 등	312	62,166	2,445	128,564
리조트 등	104	20,496		
골 프 장	17	10,453		
물류센터 등	75	9,366		
선 박	3	3,206		
해 외 건 설	10	4,948		
기타(납골당 등)	25	9,390		
일 반 대 출	30	6,094		
합 계	576	126,119		

주 : 1) 투자자산 건수 : 12건

나. 특별자산 관리현황

특별자산 관리 전담부서는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는 시점부터 특별자산 관련 대출의 취급 과정, 권리관계분석 및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현재의 자산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자산 가치의 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가치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특별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허가 및 사업권 만료 임박 사업장 등 자산가치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특별 자산에 대한 회수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회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VI-6〉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2. 특별자산 회수극대화 추진

가. 회수관리 체계

공사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자산에 대해 당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부터 회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파산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특별자산의 회수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 등 회수 전략을 수립하고, 이어서 대상자산에 대한 매각공고 및 입찰실시 등 매각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매각완료 자산에 대한 입금관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4단계의 단계별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VI-7〉 특별자산 4단계 회수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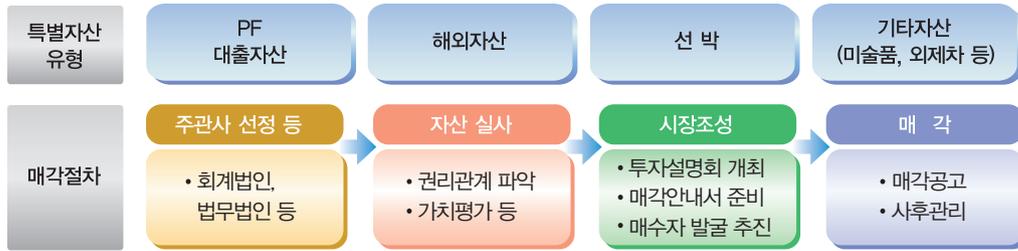


또한, 조사결과 분류된 특별자산을 자산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유형화시킨 대상 자산에 따른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집중도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특별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금융계,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매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특별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중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처음으로 잠재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및 지방 거점도시(부산 등 7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투자설명회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잠재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표 VI-8〉 특별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대외적으로는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비리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공사는 긴밀히 협력하여 압수자산을 신속히 인수하여 보전조치를 취하고, 관할법원에는 공사의 특별 자산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자산의 원활한 관리 및 회수를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등 해외 투자 특별자산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행정처리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는 외교통상부 및 현지 대사관 등의 업무협조를 구하는 등 해외에 있는 특별자산의 회수를 위하여 대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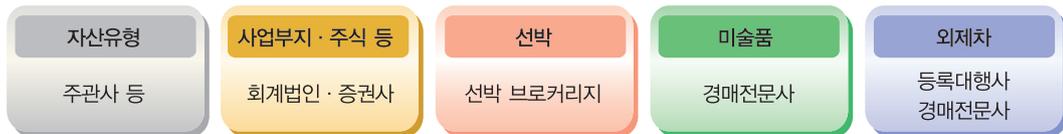


나. 회수절차

특별자산은 당해 사업의 특성과 담보물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수립한 뒤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공개 입찰 등을 통해 회수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특별자산의 공정한 매각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거쳐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석한 뒤, 사업장별 또는 자산별 특성에 맞춰 최적의 회수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다.

〈표 VI-9〉 매각 대상 자산별 외부 전문기관 유형



PF 등 특수 사업장에 대한 청산가치 및 계속사업가치를 산출하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고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대위변제 후 직접 매각하거나, 신탁사 공매, 법원 경매, 대출관련자와의 상환협의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미술품의 경우에는 경매 전에 주요 거점지역에서 순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매각과정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은 분기단위로 측정되어 평가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며, 법률상 다툼 등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단이나 물상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또는 채무의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 회수실적

공사는 특별자산의 회수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4년까지 특별자산 1조 8,394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지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주식 등 지분의 처분, 미술품 등 유체동산의 매각, 자진변제 등 상환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 특별자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회수유형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 VI-10〉 특별자산 회수유형별 실적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회 수 유 형	사 업 명	회 수 실 적
부 지 매 각	경기 남양주 평내지구 아파트 등	1,471
건 물 매 각	경기 부천시 복합쇼핑몰 등	9,198
기타 부동산 매각	전남 신안군 개발 등	887
선 박 매 각	해외 선박 등	1,300
주 식 매 각	(주)CNK인터내셔널 주식 등	922
유체동산 매각	미술품, 외제차, 기계장치 등	150
자진변제 등 상환	자유투어 관련 대출 등	1,321
임 대 료 수 입	용선료, 임대료 등	528
기 타	사업권 매각 등	2,617
합 계		18,394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제1절 파산재단 관리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제1절 파산재단 관리

1. 파산재단 관리 현황

가. 공사의 파산관재인 역할

200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는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 법원의 허가권, 감사위원의 동의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부칙 제3조는 “동법 시행 당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부보금융기관 파산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추가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2월 개정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에도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현재 전국 49개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에 공사 파산관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임되어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자금 등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Ⅷ-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개)

구 분	전 체 파산재단 ¹⁾	파 산 관 재 인		
		공사 단독	변호사 단독	공 동 ²⁾
파산재단수	49	48	-	1

주 : 1) 법적종결재단(438개) 제외, 공적자금이 미 투입된 고려·동서증권 파산재단 및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 제외
2) 공사(또는 직원)가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

나.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공사는 2007년 7월부터 지역통할책임자 제도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파산재단을 8개 광역권 별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 대리인 1인이 동일 광역권내 여러 개의 파산재단을 맡아 1개의 사무실에서 이들 파산재단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및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금 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무실 통합에 따라 임차비용, 건물관리비,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 대리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교체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2014년에도 파산관재인 대리인 간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파산관재인 대리인의 근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파산관재인 대리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파산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파산재단의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대리인과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각, 부실채권 회수업무 등에 대해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 채무조정제도 개선

공사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재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및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조정제도를 2001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특히, 2014년도에는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

하기 위해 채무조정 전 해제조건부 각서 징구를 의무화하고 사후 재산조사 실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파산재단 채무자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리플렛 및 포스터 등을 통하여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했으며,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 본인이 공사 홈페이지에서 채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사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고 부실 금융기관 등에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자산환가 및 배당 극대화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의 보유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매각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물건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매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매각실적 및 잠재수요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도에 정부 3.0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으며,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은 2014년 중 전년대비 199%에 달하는 5,219억원의 매각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장기 미매각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포털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9회)하여 112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잠재수요자들에게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정보를 이메일 및 SMS 문자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매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파산재단 보유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매각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매각을 위하여 입찰주기를 분기에서 월별로 변경(2014. 4)하고, 입찰 예정가격을 공개(2014.10)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2014년 중 총 22건, 235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파산재단 보유자산 중 부동산·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자산(골프·콘도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회원권 거래소를 통한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2014년 중 총 90구좌, 104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자산관리시스템(FAST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해 파산재단 자산의 유형별 보유현황 및 매각대상 자산 등을 상시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파산재단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파산재단의 배당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전산시스템(CDIS)'을 200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산채권 관리 및 배당금 지급 절차를 전산화 하여 배당 관련 업무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VII-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 동 산	106	748	406	2,626	304	5,219
비상장주식	6	95	26	157	22	235
회원권(골프·콘도)	50	41	32	40	90	104

* 보유자산의 공매 및 수익계약 등으로 매각한 건수 및 금액임

공사는 이처럼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등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3. 파산재단의 합리적 종결 추진

공사는 파산재단의 비용 대비 환가 효율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재단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의 협의를 거쳐 잔여자산을 평가·매각한 후 최후배당을 실시하고 법적 종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산재단을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487개 파산재단 중 438개 파산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49개 파산재단 중 효율성이 저하되었거나 소송 등 장애 사유로 종결이 지연된 재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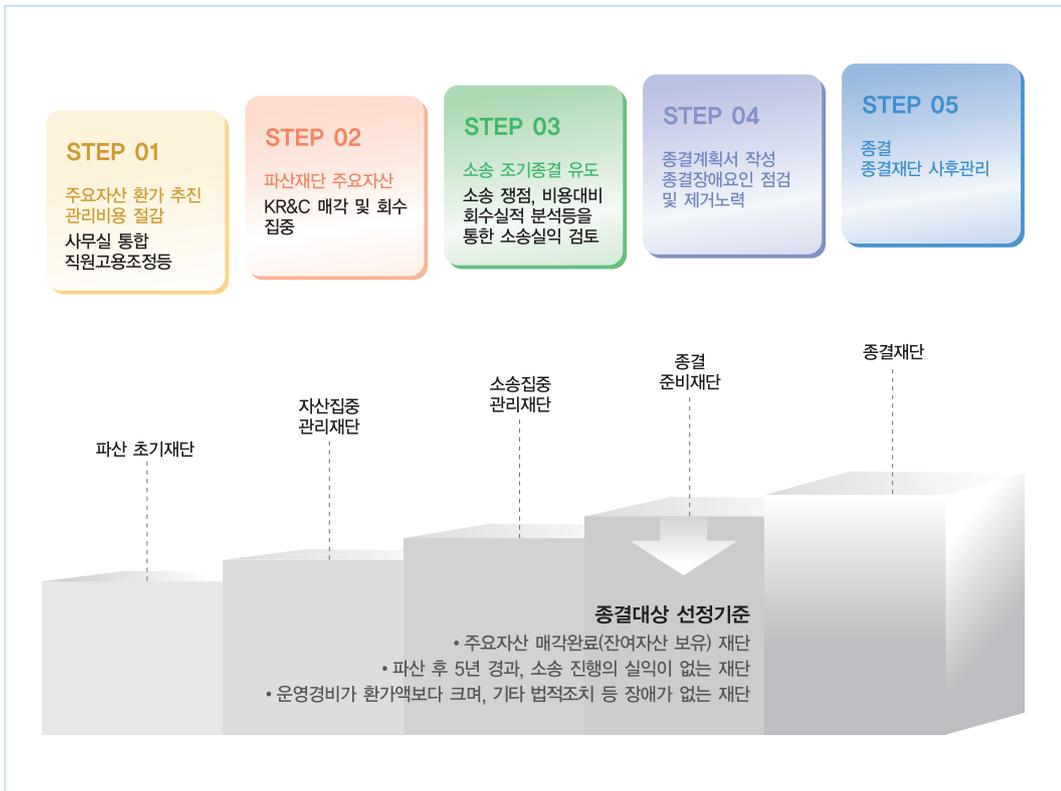
한편, 공사는 파산재단이 종결된 이후에도 각 지역통합책임자를 통해 민원 안내 및 법률관계 정리 등 종결재단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Ⅶ-3〉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증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총 파산재단 (A)		5	11	4	22	120	325	487
종결	종결재단 (B)	5	10	4	17	77	325	438
	종결율 (B/A×100)	100	91	100	77	64	100	90
진행재단 (A-B)		0	1	0	5	43	0	49

〈그림 Ⅶ-1〉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1.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현황

공사가 정리금융기관(케이알앤씨; KR&C)을 통해 인수한 자산은 2014년도 33억원(인수액 기준)으로, 2014년 말까지 그 동안 총 49조 513억원(인수액 기준, 제각 제외)을 인수하였다.

〈표 Ⅶ-4〉 2014년 중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KR&C)	파산재단	2,917	31	플러스저축은행 외 4개 파산재단
	저축은행	47	2	해솔저축은행

제일은행 매각 시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하지 않은 자산,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자산, 기타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인수 자산의 인수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공사(RFC, 現 케이알앤씨로 전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일은행으로부터 7조 8,386억원, 5개 인수은행(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으로부터 1,588억원, 5개 생명보험회사(국민·동아·태평양·한덕·대한)로부터 3,550억원, 3개 금융투자사(한투·대투·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1조 3,072억원, 466개 파산재단으로부터 3,722억원, 36개 저축은행(한마음·한중·아림·좋은·대운·홍익·경북·현대·분당·전북·으뜸·전일·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경은·에이스·제일·제일2·

진흥·토마토·토마토2·파랑새·프라임·한주·경기·신라·서울·영남·스마일·한울·해솔)으로부터 5,086억원,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 흡수과정에서 38조 5,109억원 등 2014년 말까지 총 49조 513억원(인수액 기준, 제각 제외)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표 Ⅶ-5〉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누계)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채권액	인수액	비고	
케이알앤씨 (KR&C)	은행	98,693	79,974	6개 은행(제일은행 포함)
	보험	4,032	3,550	5개 생명보험
	금융투자	25,324	13,072	3개 금융투자사
	파산재단	90,347	3,722	466개 파산재단(5개 은행, 10개 보험, 4개 금융투자, 22개 종금, 86개 저축은행, 339개 신탁 ¹⁾)
	저축은행	26,259	5,086	36개 저축은행
	소계	244,655	105,404	-
한아름종금 ²⁾	종금	330,588	326,625 ³⁾	16개 종금
한아름금고 ²⁾	금고	79,848	58,484 ³⁾	41개 저축은행
합계	655,091	490,513	-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 중앙회로 이관된 14개 파산재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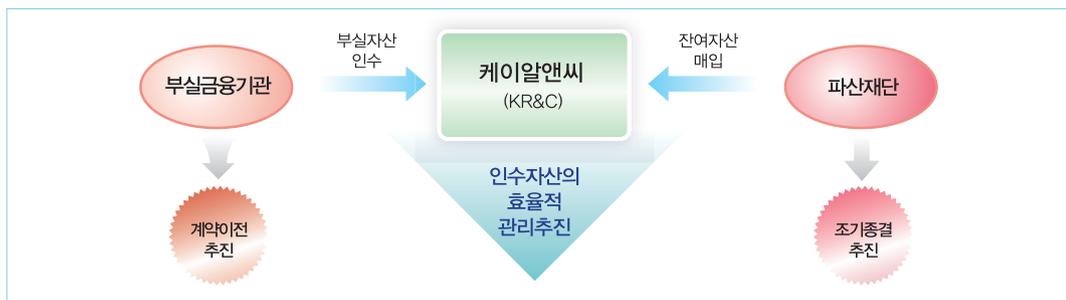
2) 공적자금 지원 분류 상 예금대지급 기관

3) 예금대지급채권 포함(제각 제외)

2.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의 효율적 관리

케이알앤씨(KR&C)는 부실금융기관의 계약 이전절차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을 신속하게 인수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단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Ⅶ-2〉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2014년말 기준 현재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 자산의 잔액은 15조 1,376억원으로 이 중 5조 9,162억원은 케이알앤씨(KR&C)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9조 2,214억원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자산의 자산가치 제고 및 적기 회수를 위해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인수·합병(M&A), 자산유동화에 의한 매각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제한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 등 케이알앤씨(KR&C)가 보유 중인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VII-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자산구분	직접관리	외부 위탁관리	합 계
대출채권	417	91,569	91,986
유가증권	476	-	476
구상채권	57,539	-	57,539
부 동 산	730	645	1,375
합 계	59,162	92,214	151,376

주: 손해배상채권 등 제외 기준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위한

2014년 저축은행 감사

주관 :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일시 : 2014년 12월 16일(화)

장소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워크숍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제8장

부실책임 추궁

- 제1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 제2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 제4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제1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효율성 제고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위법·부당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 부실금융기관 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에 의한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

2008년 3월 공사는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 간의 고도로 밀착된 불법행위에 대한 유기적 연계조사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조사를 담당하던 “舊조사부”와 부실채무기업 조사를 담당하던 “舊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국 2부로 조직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 수견 인력을 포함하여 2014년 말 현재 총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견 직원의 전문성 및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사자료 등을 제공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부실책임을 확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과 보험회사 영업정지 발생 등으로 복잡·다양해지는 부실책임 심의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경제전문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심의기준도 보완하였다.

부실책임심의 결과 2014년 말 현재 총 517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6,103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에 요구하였다.

〈표 Ⅷ-1〉 부실금융기관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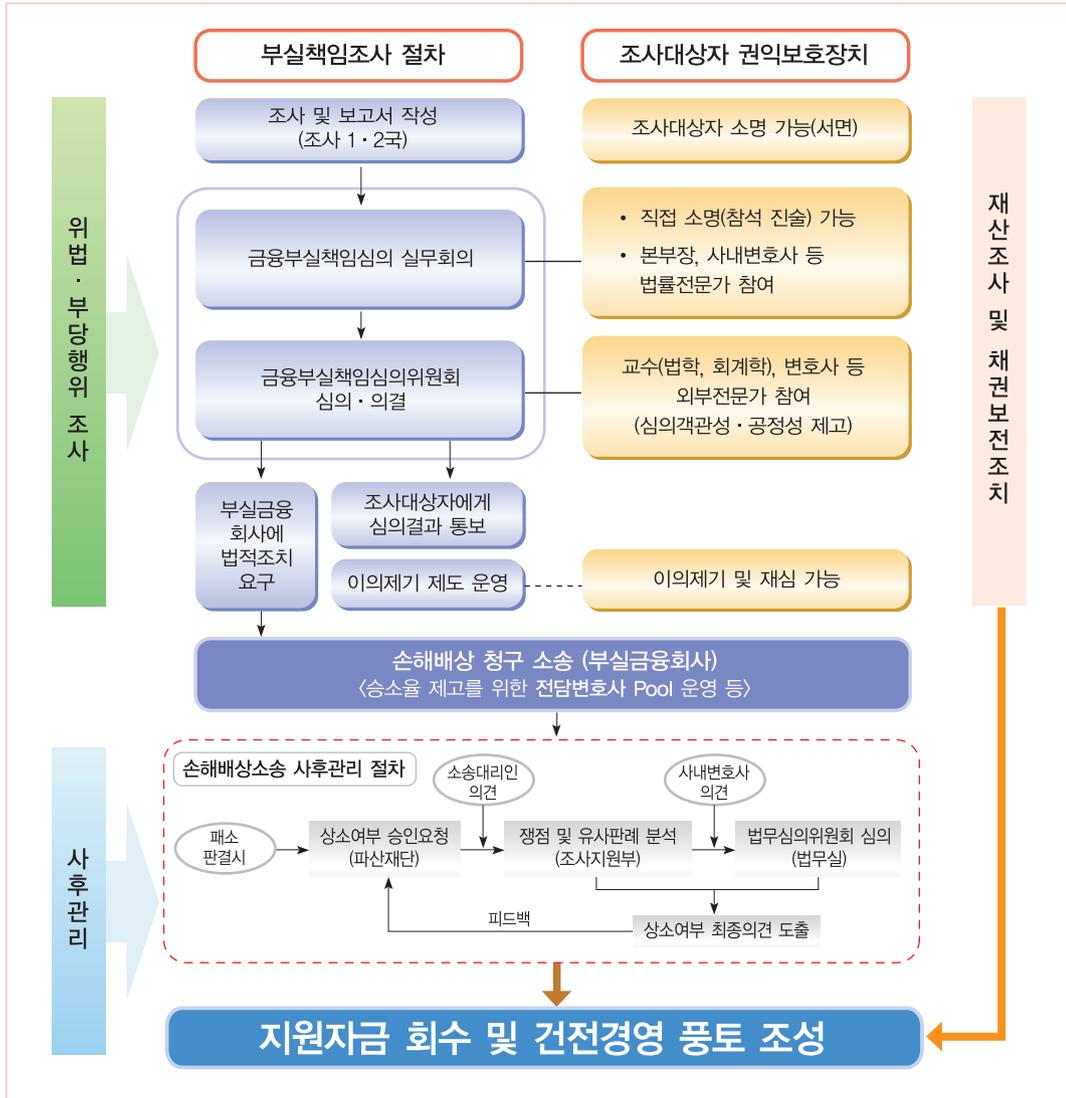
(2014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구 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기관 수	부실관련자 수	기관 수	부실관련자 수
은 행	15	191	-	-
금융투자	6	65	-	-
보 험	18	244	1	6
종합금융	22	160	-	-
저축은행	86	789	44	502
신 협 ¹⁾	325	4,146	-	-
합 계	472	5,595	45	508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Ⅷ-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2.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2014년 말까지 부실관련자 9,013명에 대해 1조 8,1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이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부실관련자 책임 재산 강제집행 등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부실책임제재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Ⅷ-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4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¹⁾	합 계
부실금융 기관수	15	6	18	22	85	311	457
피 고 수	191	83	276	181	1,026	7,256	9,013
부실책임 청구금액 ²⁾	1,004	342	2,435	3,048	5,433	5,856	18,118
부실책임 제재금액 ³⁾	471	218	1,346	548	4,056	3,208	9,847
부실책임 집행금액 ⁴⁾	102	54	218	660	923	769	2,726

-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흥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흥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2) 부실책임청구금액 :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등을 감안하여 손배소 제기한 금액(소송청구액)
 3) 부실책임제재금액 : 부실책임청구금액 중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소송승소액)
 4) 부실책임집행금액 : 부실책임제재금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도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44개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 654명에 대해 청구액 4,29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Ⅷ-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4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부실금융기관수	피고수	부실책임 청구금액 ¹⁾	부실책임 제재금액	부실책임 집행금액
44	654	1,072	742	350

- 주 : 1) 소송 확정금액 기준(총 청구액 4,299억원, 소송진행 3,227억원)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의 법적조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사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 인력 중심의 “소송지원점검반”을 구성하여 논리적·체계적 변론 및 다양한 증거자료 제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산재단 손해배상소송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부실책임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공사는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착수시점부터 부실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전과정에 걸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실책임 현장조사 착수 시부터 향후 조사 진행과정과 각 과정별 소명 또는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부실책임 심의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현장 조사인력 및 심의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필수적으로 안내할 내용과 정보를 목록화한 ‘권익보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권익보호제도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사 진행현황 조회시스템’을 택배 조회식 화면으로 구성하고 알기 쉬운 설명과 조사 과정별 소요기간 등을 추가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엄정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하거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노력

공사의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2006년말까지 마무리하였고, 예금보험기금이 지원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 부실금융기관 조사 전담 부서인 “舊 조사부”와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개편된 이후, 2013년 3월 부실채무기업 전담부서인 조사2국을 신설하여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책임재산 확보 등으로 채권회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4년 말 현재 845명에 대하여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에 통보하였다.

〈표 VIII-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누계)

(2014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기업 수	부실관련자 수
322	845

2. 부실채무기업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강화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207건, 9,96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와 동일하게 부실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도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법적조치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표 Ⅷ-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누계)

(2014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기업	피고수	부실책임 청구금액	부실책임 제재금액	부실책임 집행금액
322	1,229	9,960	4,492	1,187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 국내 재산조사 강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재산정보를 활용하여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재산자료 제공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3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원행정처가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회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2006년 3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가 명시됨으로써 조사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2014년 3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2014년 3월 23일에 실효(失効) 예정이었던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2019년 3월 23일까지 5년간 연장되어 실효성 있는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등 29개 저축은행 및 그린손해보험의 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산조사 실시 결과 위법·부당 행위로 부실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대주주·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의 금융자산 2,825억원 부동산 4,827필지를 발견하였다. 공사는

이 자료를 해당 부실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서는 2014년 12월말 현재 (가)압류3,470억원 가치분 52건의 법적조치를 하였다.

〈표 Ⅷ-6〉 2011년 이후 영업 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 현황	
	금융자산(억원)	부동산(필지)	(가)압류(억원) ¹⁾	가치분(건)
부실책임자	2,825	4,827	3,470	52

주 : 1) 가압류결정문상 청구금액

2. 해외 재산조사 확대 및 회수 강화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 재산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미국·캐나다·일본·호주·중국·뉴질랜드·필리핀 등 7개국을 조사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최초로 해외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2011년 이후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부실관련자가 급증하고 재산은닉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2013년~2014년에 걸쳐 추진한 제7차 해외 재산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국가 및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다양화하는 등 해외 재산조사를 한층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재산조사회사를 활용한 사전조사로 재산조사 및 법적조치 실익이 있는 조사대상국가의 추가 선정을 통해 조사대상 국가를 2013년 28개국에서 2014년에는 37개국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공사는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323명에 대해 해외 재산조사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미화 21백만달러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해외소송업무 기준”을 제정하고 미국, 호주 등 총 12개국 16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해외소송대리인 후보군을 선정·운영함으로써 2차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를 달성하는 동시에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미화 26백만달러 상당의 발견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실시

하여 전년대비 법적조치 금액이 4.2배 증가였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은닉재산 회수실적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표 Ⅷ-7〉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천 USD)

년 도	2003~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금 액	3,044	-	2	349	1,400	415	9,866	249	15,076

3.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 실효성 제고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고 그에 관한 조사·회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채권회수의 극대화 및 금융부실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자금흐름조사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회수실익이 있는 신고정보를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Ⅷ-2〉 은닉재산 신고센터 업무흐름도



특히 2014년 4월부터 신고별 전담자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창구를 일원화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대장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은닉재산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공사는 부실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 주요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신문 광고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SNS 광고, 유관기관(외교부,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을 실시하였다. 해외에서도 7개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캄보디아)에 현지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한인회 홈페이지 및 현지 회보 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14년 12월말까지 총 275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그 중 48건에 대해 330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총 20.1억원을 지급하였다.

〈표 Ⅷ-8〉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현황

(2014년 12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접수건수	21	12	17	10	22	21	15	19	12	17	23	53	33	275
회수건수	-	1	1	2	3	8	4	2	4	2	5	9	7	48
회수금액	-	3,156	374	231	11,791	6,184	2,637	2,830	605	1,058	825	2,553	732	32,976



제4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의 주요 원인이 대주주, 임직원 등의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이에 따라 공사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부실예방교육을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업무 취급 시 준수해야 할 법규, 최신 부실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14년에는 부실유형별 그림과 설명으로 구성된 교육 교재를 마련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육 담당자도 소송 등 실무 담당자로 확충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임직원의 직무집행,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감사의 부실예방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저축은행 감사를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한 일선 감사들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부실책임 결과를 소개하고 감사업무 착안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한편, 위법·부당대출 등 부실에 취약한 여신부문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여신담당 임원에 대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역별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부당여신 취급 사례와 임원의 부실책임 결과 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갖는 공금증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사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채권 차환발행 전략 수립 워크숍

년 11월 27일 (목)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제9장 기금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이하 '상환대책'이라 한다)에 따라 2003년 1월 1일, 금융구조 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였다. 동 기금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1. 안정적 조성

가. 특별기여금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2014년에 총 1조 3,560억원의 특별기여금을 수납하였다.

〈표 IX-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요 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¹⁾
법정한도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주 : 1) 2007년부터 신협의 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에서 5/10,000로 변경됨

〈표 IX-2〉 금융권별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¹⁾	합 계
			생 보	손 보				
2003	4,775	156	889	185	21	222	-	6,247
2004	4,956	168	978	198	6	264	-	6,570
2005	4,872	145	1,069	219	5	319	-	6,628
2006	4,987	151	1,160	242	6	370	216	7,133
2007	5,027	156	1,265	278	7	430	116	7,280
2008	4,976	185	1,364	319	8	491	129	7,472
2009	5,965	169	1,430	352	10	593	137	8,656
2010	6,811	213	1,534	409	19	715	170	9,871
2011	7,789	227	1,650	487	12	718	205	11,087
2012	8,518	226	1,760	592	10	521	228	11,855
2013	8,973	202	2,297	707	9	394	248	12,830
2014	9,590	200	2,386	790	7	323	263	13,560
합 계	77,239	2,200	17,781	4,776	120	5,360	1,712	109,187

주 : 1)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총 52조 3,064억원의 출연금을 수령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2007년 이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수납하지 않고 있다.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87조 1,599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하였다.

2003년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2002년 말 예보채 잔액 80조 9,744억원이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그 이후 만기도래하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는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라 한다)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특별기여금 및 기타 회수 자금 등으로 2008년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표 IX-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액
1998	210,150	-	210,150
1999	224,849	-	434,999
2000	89,407	-	524,406
2001	310,593	14,640	820,359
2002	36,600	47,215	809,744
2003	-	97,371	712,373
2004	-	166,227	546,146
2005	-	180,904	365,242
2006	-	190,636	174,606
2007	-	60,672	113,933
2008	-	113,933	-
합계	871,599 ¹⁾	871,599	-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 원리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상환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2014년에 1조 100억원을 3년 만기 고정금리채권으로 공모 방식을 통하여 발행하였다. 한편, 2014년 중 만기 도래한 상환기금채 5조 10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4년 말 발행 잔액은 18조 5,200억 원이다.

〈표 IX-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액
2004	65,000	-	65,000
2005	74,400	-	139,400
2006	28,705	3,155	164,950
2007	27,200	450	191,700
2008	88,000	100	279,600
2009	58,600	65,000	273,200
2010	68,100	74,400	266,900
2011	7,800	37,300	237,400
2012	47,700	56,900	228,200
2013	72,700	75,700	225,200
2014	10,100	50,100	185,200
합계	548,305	363,105	185,200

마.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2년까지 재정융자 특별회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부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상환기금 설치로 기존 차입금 잔액은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전액은 2003년 1월 1일자로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한 신규 차입은 없고, 2013년에 세계은행(IBRD) 차관의 원금 1억불(1,168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 말 현재 차입금은 없다.

〈표 IX-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차 입 금 액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기관	차 관 ¹⁾	재정융자 특별회계	소 계		
인수액	76,011	-	-	76,011	-	76,011
1998	3,295	2,416	10,582	16,293	9,337	82,967
1999	13,870	12,016	26,254	52,140	33,870	101,237
2000	90,028	13	39,533	129,574	9,802	221,009
2001	-	8	49,672	49,680	110,196	160,493
2002	-	-	59,553	59,553	3	220,043
2003	-	-	-	-	195,993	24,050
2004	-	-	-	-	11,168	12,882
2005	-	-	-	-	3,538	9,344
2006	-	-	-	-	1,168	8,176
2007	-	-	-	-	1,168	7,008
2008	-	-	-	-	1,168	5,840
2009	-	-	-	-	1,168	4,672
2010	-	-	-	-	1,168	3,504
2011	-	-	-	-	1,168	2,336
2012	-	-	-	-	1,168	1,168
2013	-	-	-	-	1,168	1,168
합 계	183,204	14,453	185,594	383,251	383,251	0

주 : 1) IBRD, ADB 차관자금 등

2. 지원

가. 개 관

공사는 상환기금을 통해 예금보험금의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2014년 총 0.06억원의 자금을 전액 출연 형태로 지원하였다.

〈표 IX-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4년)

(단위 : 억원)

금융권	출자	출연	자산매입	대출	예금보험금 지급	합계
은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험	-	0.06	-	-	-	0.06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	-	-	-	-	-
신협	-	-	-	-	-	-
합계	-	0.06	-	-	-	0.06

2014년 말까지 공적자금 형태로 상환기금에서 부보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총 110조 8,945억원이다. 이중 부보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 30조 3,124억원(27.3%),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50조 7,937억원(45.8%),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18조 6,117억원(16.8%),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1조 1,767억원(10.1%) 등이 지원되었다.

〈표 IX-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융권	출자	출연	자산매입 ¹⁾	대출	예금보험금 지급 ¹⁾	합계
은행	222,039	139,189	81,064	-	-	442,292
금융투자	99,769	4,143	21,239	-	113	125,264
보험	159,198	31,192	3,495	-	-	193,885
종합금융	26,931	7,431	-	-	182,718	217,080
저축은행	1	4,161	-	5,969	72,892	83,023
신협	-	-	-	-	47,402	47,402
합계	507,937	186,117	105,799	5,969	303,124	1,108,945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포함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은행

2014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2) 보험

KB생명은 과거 한일생명 인수 시 공사와 체결한 출연약정서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면보험금에 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공사는 2014년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0.06억원을 추가 출연하였다.

(3) 금융투자

2014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4) 저축은행

2014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저축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표 IX-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저축은행 수	예금보험금 지급 금액
1998	17	14,705
1999	19	14,272
2000	11	6,500
2001	5	29,537
2002	10	7,719
2003	7	5
2004	8	26
2005	7	1
2006	8	3
2007	2	128
2008	-	△4
2009	1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합 계	95	72,892

〈표 IX-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기 관	출 자		출 연		대 출	
	2013년 이전	2014년	2013년 이전	2014년	2013년 이전	2014년
경기(舊코미트)	-	-	254	-	1,654	-
경북(舊한우리)	-	-	85	-	-	-
대전(現 대전)	-	-	-	-	102	-
도민(금강)	-	-	28	-	709	-
동원(한국투자)	-	-	63	-	783	-
부민(부산)	-	-	243	-	-	-
부산 2	-	-	-	-	271	-
상업(舊현대)	-	-	701	-	-	-
새누리	-	-	13	-	21	-
솔로몬(舊골드)	-	-	663	-	-	-
신충북	-	-	-	-	161	-
아 름	-	-	-	-	615	-
유니온	-	-	39	-	518	-
제이원	-	-	325	-	-	-
조 일	-	-	29	-	738	-
충남(舊새온양)	-	-	-	-	45	-
충 일	-	-	-	-	89	-
텔스(舊신한국)	-	-	775	-	-	-
하나로	-	-	422	-	-	-
한마음	-	-	521	-	-	-
해동(경기)	-	-	-	-	263	-
케이알앤씨(KR&C)	1 ¹⁾	-	-	-	-	-
합 계	1	-	4,161	-	5,969	-

주 : 1) 2001년 12월 말 정리금융공사(RFC)로 합병된 한아름금고에 대한 출자

3.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먼저 부보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보금융기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둘째, 예금대지급·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한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파산한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공사가 직접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부보금융기관에 대출한 자금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는 2014년에 2조 4,449억원을 회수하고, 2014년 말까지 총 53조 4,036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X-10〉 상환자금의 회수(2014년)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용 권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 행	21,892	-	194	-	3	22,089
금융투자	-	-	15	-	-	16
보 험	1,083	-	-	-	-	1,083
종합금융	156	-	-	-	1,034	1,190
저축은행	-	1	-	-	70	71
신 협	-	-	-	-	-	-
합 계	23,132	1	209	-	1,107	24,449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표 IX-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금융권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행	184,945	701	66,039	-	18,472	270,157
금융투자	12,122	3,231	18,004	-	78	33,435
보험	39,177	888	2,419	-	4,310	46,795
종합금융	1,605	59	-	-	89,689	91,354
저축은행	-	343	-	5,969	51,791	58,103
신협	-	4	-	-	34,188	34,192
합 계	237,849	5,226	86,462	5,969	198,530	534,036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나. 보유주식의 매각 등

(1) 은행

공사는 2014년 중 경남·광주은행 보유지분 전량(56.97%) 매각으로 1조 7,272억원, 우리은행 보유지분 일부(5.94%) 매각으로 4,531억원, 제주은행 잔여지분(16.38%) 매각을 통해 242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제주은행 배당금을 통해 4억원을 회수하였다.

(2) 보험회사

공사는 2014년 중 한화생명보험 배당금을 통해 279억원,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을 통해 803억원을 각각 회수하였다.

(3) 금융투자회사

공사는 과거 한국투자증권 및 대한투자증권 매각 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및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 경매 배당금 0.12억원 및 현투증권 SPC 청산수입으로 16억원을 회수하였다.

(4) 종합금융회사

공사는 우리은행 소수지분(5.94%) 매각시 은행계정 외에 우리중금 해당액 156억원을 회수하였다.

다.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회수

케이알앤씨(KR&C)는 그 동안 인수자산에 대해 대출채권 회수 등의 전통적 방법은 물론 M&A방식에 의한 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 SP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하여 2014년말 누적기준으로 총 41조 5,323억원을 회수하였다.

2014년 케이알앤씨(KR&C)는 대출채권의 원리금 추심 등으로 1,073억원, 대우조선해양 주식 블록세일 198억원을 포함한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 등으로 342억원, 공매를 통한 부동산 등 매각으로 130억원 및 구상채권 파산배당 등으로 405억원 등 총 1,950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X-12〉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년 도	자산구분	대상 자산	회수액	회수 방법
2014년중 회수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1,051	추심 및 소송 등
		외화 채권	22	
		소 계	1,073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342	공매, 장중매각, 배당 등
	부동산 등	대지 등	130	공매 등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405	파산배당
	합 계		1,950	-
누계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108,064	국제입찰, NPL매각, ABS 발행 등
		외화 채권	30,726	
		소 계	138,790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61,814	공매, 블록세일 등
	부동산 등	대지 등	6,838	공매 등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207,881	파산배당
	합 계		415,323	-

라. 파산배당

2014년 중 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을 통하여 은행 파산재단으로부터 3억원, 저축은행 파산재단으로부터 70억원, 종합금융 파산재단으로부터 1,034억원으로 총 1,107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하여 2014년 말까지 총 19조 8,530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X-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¹⁾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금융권	파산재단 수	회수액	
		2014년	1999년~2014년 총회수액
은행	5	3	18,472
보험	10	-	4,310
금융투자	4	-	78
종합금융	22	1,034	89,689
저축은행	75	70	51,791
신협	325	-	34,188
합계	441	1,107	198,530

주 : 1) 공사가 파산재단(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및 케이알앤씨(舊 한아름증권·금고를 통해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로부터 수령한 파산배당 회수금액

마. 대출금 회수 등

공사는 2014년 말까지 대출 형태로 총 5,9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였다. 또한, 2014년 말까지 출연금 정산 등을 통해 회수한 지원금은 총 5,226억원이며, 2014년 중 두원, 현대, 삼신생명의 한화생명 계약이전 관련 출연금 정산으로 0.05억원,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약 1억원을 회수하였다.



제2절 예금보험기금

1. 자원 조성의 다양화

가. 예금보험료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2년까지 수납한 예금보험료는 상환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한편, 2011년 3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별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다만,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와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 발행,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공사는 특별계정을 포함하여 2014년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조 1,872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하였다.

〈표 IX-14〉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8/10,000	15/10,000 ¹⁾	15/10,000	15/10,000	40/10,000 ²⁾
법정 한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주 : 1) 2007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예금보험료율 30% 인하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예금보험료율 변경(기존 35/10,000)

〈표 IX-15〉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수입

(단위 : 억원)

연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계 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4,775	312	2,580	535	73	667	-	8,942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	9,509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	10,484
2007	5,027	256	3,654	801	22	1,306	-	11,066
2008	4,808	305	3,934	918	24	1,483	-	11,472
2009	5,291	276	4,097	1,016	29	1,737	-	12,446
2010	5,451	284	2,609	698	34	2,524	-	11,600
2011	4,795	283	2,362	700	18	2,331	1,742	12,231
2012 ⁵⁾	3,748	2	-14 ³⁾	100	8	1,344	5,816	11,004
2013 ⁵⁾	3,948	-	221	488	8	253	6,672	11,590
2014 ⁵⁾	4,197	-	811	445	6	256	6,158	11,872
합계	56,855	2,658	29,557	7,596	272	14,785	20,389	132,112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설치
3) 2012년 이전에 납부한 예금보험료에 대한 환급
4)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5)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2012년(금투·생보 면제, 손보 15% 감액), 2013년(금투 면제, 생보 45% 감액, 손보 7% 감액), 2014년(금투 면제, 생보 38% 감액, 손보 1% 감액) 예금보험료 감면 조치

나.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부보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년까지 수납한 출연금은 상환

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2003년부터 수납한 출연금은 현행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공사는 2014년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91억원의 출연금 수납하였다.

〈표 IX-16〉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단위 : 억원)

연 도	은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합 계 ²⁾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0,3	-	6,5	2,0	-	-	-	8,8
2004	3,4	2,0	6,0	2,0	-	-	-	13,4
2005	2,2	2,0	-	-	-	12,5	-	16,7
2006	3,8	8,0	-	2,0	-	13,4	-	27,2
2007	-	-	-	-	-	-	-	-
2008	1,6	110,1	-	-	-	5,6	-	117,2
2009	7,7	43,1	4,2	3,4	0,2	7,8	-	66,3
2010	0,8	5,8	9,0	0,3	-	-	-	15,9
2011	0,3	-	-	-	-	12,0	-	12,3
2012	5,8	1,3	50,0	8,0	-	24,0	-	89,1
2013	0,8	21,7	3,2	3,1	0,0	49,8	-	78,6
2014	-	0,6	-	-	-	90,6	-	91,2
합 계	26,7	194,6	78,9	20,8	0,2	215,7	-	536,7

주 : 1)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 및 제26조의2에 따라 2011년 12월 정부보증 없이 공사 자체 신용으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다. 2013년까지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총 23조 3,3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14년 중 1조 2,000억원의 채권을 상환하였다.

〈표 IX-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11	12,000	-	12,000
2012	200,400	-	212,400
2013	20,900	-	233,300
2014	-	12,000	221,300
합 계	233,300	12,000	221,300

라.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과 2004년에 1,664억원을 차입하였고,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007년에 2,31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1년 이후에 26조 6,456억원을 차입하였다.

〈표 IX-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계정별	연 도	차 입 금 액 ¹⁾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기관	한국은행 등	정 부	소 계		
저축 은행	2007	2,314	-	-	2,314	-	2,314
	2008	-	-	-	-	2,314	-
	소 계	2,314	-	-	2,314	2,314	-
특별 계정	2011	104,199	-	-	104,199	12,000	92,199
	2012	141,932	-	1,000	142,932	222,625	12,506
	2013	19,364	-	1,000	20,364	30,870	2,000
	2014	960	-	500	1,460	960	2,500
	소 계	266,455	-	2,500	268,955	266,455	2,500
합 계		268,769		2,500	271,269	268,769	2,500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흥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이중 신용협동조합계정의 외부 차입금은 파산배당 등 자체 회수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920억원을 상환한 후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잔액을 모두 이관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부 차입금이 없고, 저축은행계정의 외부차입금도 2008년 중 2,314억원 전액을 상환하였다.

한편, 2011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정리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은 은행 등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2014년 말까지 총 26조 8,769억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특별계정 재원확충의 일환으로 2012년 이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무이자(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2,500억원의 용자를 수령하였다.

2014년 말까지 특별계정 차입금 27조 1,269억원 중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26조 8,769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 말 차입금 잔액은 2,500억원이며, 이는 전액 정부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이다.

2. 적시 지원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에 지출한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저축은행 등 16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저축은행계정을 통해 총 4조 5,2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은 특별계정을 통해 총 27조 1,16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에 1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계정을 통해 22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X-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4년)

(단위: 억원)

계 정 별 ¹⁾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특별계정	-	3,042	34	2	-	3,078
합 계	-	3,042	34	2	-	3,078

주 : 1) 특별계정 및 손해보험계정 외에 타 계정은 2014년 중 신규 자금 지원 없음

〈표 IX-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계정별	출자	출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출	개산지급금	합계 ¹⁾
은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험	-	226	-	-	-	226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3,655	229,354	36,247	1,136	775	271,167
합계	4,866	254,122	50,659	6,027	994	316,668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저축은행(특별계정)

공사는 2011년부터 영업정지된 30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전이 확정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순자산부족분 출연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자산은 케이알앤씨(KR&C)로 계약이전하여 이에 따른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2014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X-21〉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예금보험금 지급 (가지급금 포함)	출연, 대출 등	합계
삼화 등 16개 저축은행	2011년 중	32,772	127,034	159,806
솔로몬 등 8개 저축은행	2012년 중	3,447	86,707	90,154
서울 등 5개 저축은행	2013년 중	28	18,185	18,213
해솔	2014. 5. 7	-	2,994	2,994
합계		36,247	234,920	271,167

* 2014년 중 솔로몬 등 9개 저축은행에 예금보험금 및 출연금 등으로 84억원 추가 지원

(2) 보험회사

2003년 이후 저축은행 이외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었으나, 2012년 영업 정지된 그린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손해보험계정을 통해 제3자 계약이전 자산부족분에 대한 출연금 226억원을 인수자(MG손해보험) 앞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 하였다.

〈표 IX-22〉 손해보험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손해보험회사	영업정지일	예금보험금 지급 (가지급금 포함)	출연, 대출 등	합 계
그 린	2012. 5.16	-	226	226
합 계		-	226	226



3.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지원한 자금도 상환기금의 회수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부보금융기관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회수,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따른 파산배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자금 상환 등의 회수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4년에 저축은행계정은 617억원, 특별계정은 2조 7,934억원을 회수하였고, 2003년부터 2014년 말까지 누적으로 총 5조 6,099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X-23〉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4년 및 누계)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보험금회수	대출금회수	개산지급금 회수	합 계 ¹⁾
2014년	저축은행	292	57	240	28	-	617
	특별계정	1,841	24,565	1,488	6	34	27,934
	합 계	2,133	24,622	1,728	34	34	28,551
2003~2014년 말 누계		5,948	30,578	13,318	5,434	820	56,099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4년 중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26,384억원의 파산배당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누계실적으로 총 43,170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공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케이알앤씨(KR&C) 등을 통해 경북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6,027억원을 대출하여 총 5,434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X-24〉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용 권	파산배당금 등 회수 ¹⁾		대출금 회수 ¹⁾	
	2014년 중	2003~2014년 말 누계	2014년 중	2003~2014년 말 누계
저축은행(특별계정 포함)	26,384	43,170	34	5,434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기금 건전성 제고

2003년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한 이후 2006년 5월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를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사는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를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2007년 10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하여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2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생명보험계정과 손해보험계정을 분리하고 부보 금융기관의 수가 적은 중금계정은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예금보험료를 인하,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정리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6개 계정 외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일부 및 회수자금 등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달하여 2011년 이후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매년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발간하고,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 및 해당 연도 운용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2012년 7월 및 2013년 11월, 2014년 10월에는 특별계정의 재원확충 및 조성재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로부터 무이자 조건으로 총 2,500억 원의 차입금을 수령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공사는 특별계정을 통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을 2011년 12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채권 발행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2년 8월 공사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2014년 하반기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 등으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은행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금수신 의사가 높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시장금리 수준 및 수익률곡선에 대한 전망, 주요 경제동향 예측을 바탕으로 자산배분비중과 채권 듀레이션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투자한도 설정 시 자금 수신의사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기금의 실질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용·유동성·운영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기준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성과 분석시 채권형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토대로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였다.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10장

2014년도 결산

제1절 결산 개요

제2절 결산 기준

제3절 결산 현황

제1절 결산 개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계리)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공사회계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 등 3개의 회계단위로 구분계리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기금과 공사회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한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으며, 상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다.

공사는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2014회계연도에는 예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제2절 결산 기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의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고, 상환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1.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예금보험기금만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

(2) 유가증권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 후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관계기업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지분비율만큼 취득원가에 가감처리하고 동시에 자본항목을 증감시키거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손상된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또는 상각 후 취득원가)와 공정가액(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나. 대출금 등의 평가

대출금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지급준비금

보험사고 발생 및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다.

라.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자금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을 감소시키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다. 예금 보험료수입과 예금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수익 · 비용의 기간귀속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손익을 계상하였다.

- (1) (비용의 이연) 당해 연도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고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였다.
- (2) (비용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여 비용에 가산하였고, 결산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
- (3) (수익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계약 또는 약관에 정한 기일이 미도래하여 결산일 현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수익으로 표시하여 수익에 가산하였다.

생활금융교육 지역강사 위촉장 수여식

2014년 12월 5일, KDIC 생활금융교육센터



II. 상환기금

1.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상환기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

채무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나. 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 미수채권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장기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라. 공채발행차금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공채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마.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상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동 과목을 감소시키고 관리운영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은 프로그램충원가로 그 이외의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

3.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교환 수익의 경우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 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비용인식기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 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3절 결산 현황

1.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구분회계단위인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통합결산서를 작성한다.

구분회계단위별 재무 현황 및 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보험기금

(1) 재무 현황

2014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16조 4,339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8,796억원(5.1%)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보험료 수입 등으로 기초대비 운용자산 증가(2조 647억원)함에도 불구하고, 파산배당 등에 따라 구상채권이 감소(2조 9,306억원)한데 기인한다.

2014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22조 6,338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1조 2,809억원(5.4%)감소하였다. 이는 예특채 상환(1조 2,000억원), 충당부채* 감소(1,142억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

* 자금지원예상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기금의 손실예상액(해술 △1,311억원), 골든브릿지(166억원) 등

2014년말 현재 자본 총액은 (-)6조 1,999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4,013억원(6.1%)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당기순이익(3,807억원)로 인하여 결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손익 현황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3,80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2013년 대비 3,282억원(46.3%)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은 8,348억원으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영업수익(1조 7,388억원)의 경우 예금보험료 수익(1조 4,848억원), 운용자산 이자수익(2,389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영업비용(9,040억원)의 경우 이자비용(8,152억원)과 공사운영비(85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영업외손익은 (-)4,541억원으로 주로 구상채권 회수예상가액 감소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순전입액(△6,035억원), 충당부채 순환입액(1,14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공사회계

(1) 재무 현황

2014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196억원으로 2013년말(196억원)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동자산은 21억원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분, 4대 보험 납부 등을 위한 예수금 등이 전년 대비 늘어 2013년말 대비 4억원 증가하였다. 비유동자산은 175억원으로, 기타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7억원 가량 증가한 반면, 순확정급여자산이 10억원 감소*함에 따라 2013년말 대비 4억원 감소하였다.

* 전기에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를 초과하여 순확정급여자산 계상한 반면 당기에는 순확정급여부채 계상

2014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약 248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22억원(9.3%) 증가하였다.

2014년말 현재 자본 총액은 약 (-)52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22억원(73.3%) 감소하였다.

공사회계의 자본이 (-)인 사유는 2013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2014년 근로 제공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 경영평가 성과급 42억원을 부채로 미리 반영하였고 보험 수리적 가정에 의한 순확정급여부채가 11억원 계상됨에 따라 회계상 부채가 크게 증가함(실제 자금수지와는 무관)에 기인한다.

(2) 손익 현황

2014년 중 당기순이익은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액인 2억원 발생하였다.

총수익은 936억원으로 기금전입수익(926억원)을 포함한 영업수익 927억원과 기타수익 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비용은 934억원으로 인건비 566억원(60.6%)과 경비 368억원(39.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환기금

가. 재무 현황

2014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9조 1,070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3조 3,273억원(26.8%) 감소하였다.

유동자산의 경우 상환기금채권 순상환 등으로 운용자산이 감소(8,753억원)하는 등 총 8,775억원 감소하였으며, 투자자산의 경우 보유주식 처분 및 평가손실 등에 따라 지분증권이 감소(2조 4,467억원)하는 등 2조 4,526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기타 비유동자산의 경우 구상채권 대손충당금 환입 등으로 28억원 증가하였다.

2014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18조 7,410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3조 9,990억원(17.6%)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상환기금채권을 순상환(4조원)한데 기인한다.

2014년말 현재 자본 총액은 (-)9조 6,340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6,717억원(6.5%)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 2조 4,617억원 시현과 보유주식 처분 및 평가손실 등으로 인한 순자산조정 1조 7,900억원 감소에 기인한다.

나. 손익 현황

2014년 중 재정운영결과*는 (-)2조 4,617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1조 6,136억원(190.3%)

개선되었다. 2014년 중 순이익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보유주식처분손익(1조 4,460억원), 상환기금채권 순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2,070억원) 등에 기인한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負(-)인 경우 발생한 원가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상환기금의 고유사업인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799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8,764억원에서 프로그램차감수익 1조 9,563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1조 1,057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1조 799억원에서 관리운영비 76억원을 가산하고 및 비배분수익 334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원가로 배부되지 않은 경비 등의 관리업무비를 말하며, 비배분수익 및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한편, 재정운영결과 (-)2조 4,617억원은 재정운영순원가 (-)1조 1,057억원에서 비교환수익 1조 3,560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특별기여금수익을 말한다.



〈표 X-1〉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73,314	58,856	유동부채	101,347	15,748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46	1,598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금융부채 발생이자 등)	2,339	2,369
2. 유동금융자산	63,605	50,833	2. 유동금융부채	98,816	12,003
매도가능금융자산	12,185	18,024	단기차입금	-	-
단기대여금	1,211	1,209	사채	98,800	12,000
(대손충당금)	(-559)	(-521)	(사채할인(증)발행차금)	16	3
단기금융상품	50,768	32,121	3. 유동비금융부채	9	45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8,162	6,423	단기예수금	9	45
단기미수수익	8,182	6,445	4. 유동충당부채	183	1,331
(대손충당금)	(-20)	(-22)	종업원급여충당부채	17	20
4. 유동비금융자산	1	2	기타유동충당부채	166	1,311
단기선급비용	1	2	비유동부채	125,138	223,530
비유동자산	91,119	114,379	1. 비유동금융부채	125,050	223,456
1. 비유동금융자산	22,774	16,723	장기차입금	2,500	2,000
매도가능금융자산	22,445	12,746	(현재가치할인차금)	(-789)	(-699)
장기대여금	7	6	정부보조금	770	690
장기금융상품	322	3,970	사채	122,500	221,300
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2	111	(사채할인(증)발행차금)	69	165
장기보증금	116	119	2. 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현재가치할인차금)	(-4)	(-8)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3. 유형자산	45	38	3. 종업원급여채무	11	-
토지	1	1	순확정급여채무 등	11	-
건물	15	15	4. 비유동충당부채	3	-
구축물	9	10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	3	-
기타유형자산	209	195	부채총계	226,485	239,278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89)	(-184)			
4. 영업권외 무형자산	6	6	결손금	(-62,302)	(-66,087)
기타무형자산	6	6	당 기: (+) 3,809		
5. 비유동비금융자산	68,182	97,492	전 기: (+) 7,097		
장기선급비용	4	8	기타자본구성요소	250	44
장기구상채권	254,677	278,59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0	44
(대손충당금)	(-186,499)	(-181,109)	자본총계	(-62,052)	(-66,043)
6. 순확정급여자산	-	10	부채및자본총계	164,433	173,235
자산총계	164,433	173,235			

〈표 X-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당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이익 (A=B-C)	8,344	5,439
영업수익 (B)	17,474	14,676
(보험료수익)	14,848	12,420
(이자수익)	2,390	2,036
(이전수입)	150	110
(기타수입)	86	110
영업비용 (C)	9,130	9,237
(이자비용)	8,151	8,236
(인건비)	566	579
(경비)	368	366
(기타)	45	56
기타 손익 (D)	(-)4,843	1,987
기타총당부채 순환입액	1,144	(-)1,311
대손총당금 순환입(전입)액	(-)6,035	3,271
기타	48	27
금융 손익 (E)	308	(-)329
(금융자산처분손익)	308	(-)131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	(-)198
당기순이익(F=A+D+E)	3,809	7,097
기타포괄손익(G)	182	(-)61
총포괄손익(H=F+G)	3,991	7,036

〈표 X-3〉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73,293	58,839	유동부채	101,286	15,691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26	1,583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금융부채 발생이자)	2,304	2,342
(정부보조금)	-	-	2. 유동금융부채	98,816	12,003
2. 유동금융자산	63,605	50,833	단기차입금	-	-
매도가능금융자산	12,185	18,024	사채	98,800	12,000
단기대여금	1,211	1,209	사채할증발행차금	16	3
(대손충당금)	(-559)	(-521)	3. 유동비금융부채	-	35
단기금융상품	50,768	32,121	단기선수금	-	-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8,162	6,423	단기예수금	-	35
단기미수이익	8,182	6,445	4. 유동총당부채	166	1,311
(대손충당금)	(-20)	(-22)	비유동부채	125,052	223,456
비유동자산	91,046	114,296	1. 비유동금융부채	125,049	223,456
1. 비유동금융자산	22,767	16,716	장기차입금	2,500	2,000
2. 비유동비금융자산	68,279	97,580	(현재가치할인차금)	(-789)	(-699)
장기구상채권	254,677	278,593	정부보조금	770	690
(대손충당금)	(-186,499)	(-181,109)	사채	122,500	221,300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101	96	(사채할인(증)발행차금)	68	165
			2. 비유동총당부채	3	-
			부채총계	226,338	239,147
			결손금	(-62,250)	(-66,057)
			당 기: (+) 3,807		
			전 기: (+) 7,089		
			기타자본구성요소	251	4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1	45
			자본총계	(-61,999)	(-66,012)
자산총계	164,339	173,135	부채및자본총계	164,339	173,135

〈표 X-4〉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당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이익 (A=B-C)	8,348	5,436
영업수익 (B)	17,388	14,565
(보험료수익)	14,848	12,420
(이자수익)	2,389	2,035
(이전수입)	151	110
영업비용 (C)	9,040	9,129
(이자비용)	8,152	8,236
(공사운영비 등)	888	893
기타 손익 (D)	(-)4,849	1,982
기타충당부채 순환입(전입)액	1,143	-1,311
대손충당금 순환입(전입)액	(-)6,035	3,271
기타	43	22
금융 손익 (E)	308	-329
(금융자산처분이익)	308	-131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	-198
당기순손익(F=A+D+E)	3,807	7,089
기타포괄손익(G)	206	-82
총포괄손익(H=F+G)	4,013	7,007

〈표 X-5〉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공사회계)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21	17	유동부채	62	57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0	15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미지급비용, 연차휴가 관련)	35	27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2. 유동비금융부채	9	10
단기미수수익	-	-	단기예수금	9	10
3. 유동비금융자산	1	2	3. 유동총당부채	18	20
단기선급비용 등	1	2	경평성과급 부채	18	20
비유동자산	175	179	비유동부채	186	169
1. 비유동금융자산	7	6	1. 비유동비금융부채	175	169
장기대여금	7	6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175	169
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2	111	2. 종업원급여채무	11	-
장기보증금	116	119	순확정급여채무	11	-
(현재가치할인차금)	(-4)	(-8)	부채총계	248	227
3. 유형자산	46	38			
토지	1	1			
건물	14	15			
구축물	2	10			
기타유형자산	209	195			
(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등)	(-180)	(-184)			
4. 영업권외 무형자산	6	6	결손금	(-52)	(-30)
기타무형자산	6	6	당 기: (-)22		
5. 비유동비금융자산	4	8	전 기: (+)30		
장기선급비용	4	8	자본총계	(-52)	(-30)
6. 순확정급여자산	-	10			
자산총계	196	196	부채및자본총계	196	196

〈표 X-6〉 요약 손익계산서

- 당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사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이익 (A=B-C)	(-)7	2
영업수익 (B)	927	948
(이자수익)	1	1
(기금전입수익)	926	947
영업비용 (C)	934	945
(인건비)	566	579
(경비)	368	366
기타 손익 (D)	9	5
총당부채환입액	2	1
기타수익	7	4
당기순손익(F=A+D+E)	2	8
기타포괄손익(G)	(-)24	22
총포괄손익(H=F+G)	(-)22	30



〈표 X-7〉 요약 재정상태표

• 당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순자산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22,398	31,173	유동부채	48,966	52,063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937	2,267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46,901	50,120
2. 단기금융상품	20,304	25,873	2. 기타유동부채	2,065	1,943
3. 단기투자증권	1,004	2,857			
4. 미수채권	11,115	13,859			
(대손충당금)	(-11,028)	(-13,722)	장기차입부채	138,444	175,337
5. 단기대여금	113	73	1. 공채	138,444	175,337
(대손충당금)	(-47)	(-35)			
투자자산	68,562	93,088			
1. 장기대여금	143,686	143,799			
(대손충당금)	(-139,754)	(-139,809)			
2. 장기투자증권	64,630	89,098			
			부채총계	187,410	227,400
기타비유동자산	110	82			
1. 장기미수채권	41	71	순자산		
(대손충당금)	(-41)	(-70)	1. 기본순자산	523,064	523,064
2. 기타의비유동자산	110	81	2. 적립금및잉여금	(-630,550)	(-655,167)
			3. 순자산조정	11,146	29,046
			순자산계	(-96,340)	(-103,057)
자산총계	91,070	124,343	부채와순자산계	91,070	124,343

〈표 X-8〉 요약 재정운영표

- 당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8,764	19,563	(-)10,799	11,741	6,990	4,751
1. 금융정책지원	8,764	19,563	(-)10,799	11,741	6,990	4,751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1,492			-		
지급수수료 등	66			32		
대손상각비	328			2,761		
공채 등 이자비용	6,878			8,948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15,952			1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14			11	
정부외용자금이자수익		1,326			3,551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786			413	
대손충당금환입		398			70	
배당금수익		1,086			2,944	
잡이익		1			-	
II. 관리운영비			76			100
1. 인건비			-			-
2. 경비			76			100
III. 비배분비용			-			30
1. 지급수수료			-			1
2. 기타비용			-			29
IV. 비배분수익			334			532
1. 이자수익			219			464
2. 평가이익			24			-
3. 기타수익			91			68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1,057			4,349
VI. 비교환수익			13,560			12,830
1. 부담금수익			13,560			12,830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24,617			(-)8,481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Workshop

2014.11.27(목) 공사 19층 대강당

공사 종합발전방안 2단계 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대외평가
3. 2014년도 주요일지
4. 통계

1. 예금보험제도 개요

가. 예금보험제도 의의

예금보험제도는 평상시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나. 부보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이에 해당된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국내지점을 포함하여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모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포함된다.

다. 부보예금

부보예금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그 보호범위가 정해져 있다. 1997년 말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되었던 일부 금융상품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예금이 2001년 1월 1일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부보예금 및 비부보예금 현황 〉

(2014년 12월말 현재)

구분	부보예금	비부보예금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증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합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증금사발행채권 등
상호 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라. 보호한도

1996년 공사 출범 당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만원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한도를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한편, 원리금 전액 보장으로 인한 예금자와 부보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1998년 7월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금 계산방식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원금만 보호하는 것이었다.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공사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2001년부터 환원 예정이었던 예금부분보호제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호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

구 분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19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	1998년 8월 1일 이후 가입		
		원금 2,000만원 이하 (또는 납입보험료 2,000만원 이하)	원금 2,000만원 초과 (또는 납입보험료 2,000만원 초과)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원금과 약정이자 전액보호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	원금만 보호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
보 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전액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액과 납입보험료와 소정의 이자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2,000만원 한도에서 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액과 납입보험료 중 적은 금액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예금보험사고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고보험금은 전액보호		

2. 대외평가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사는 2014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3년도 경영실적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경영평가단으로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았다.

2014년 6월에 발표된 2013년도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기관 평가에서 ‘보통(C등급)’을 달성하였다.

나. 기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는 사업운영과 자산운용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2013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2월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동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13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 최우수 등급인 “탁월”(44개 기금 중 6개에 부여)을 획득하여 최고 수준의 기금운용 역량을 인정받았다.

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공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받았다.

2015년 2월에 발표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사는 2등급(우수)을 획득하여 2010년 이후 5년 연속 2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 최근 3년 연속 2등급(우수) 이상 획득기관 : 전체 254개 기관 중 40개 기관

아울러, 공사 내부직원 및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도 2010년 이후 5년 연속하여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라.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활동 심사

공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 매년 1월 공사의 자체감사활동 실적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여타 자체감사기구 직원을 포함하는 평가단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았다. 심사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및 사후관리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지난 2014년 7월 발표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공사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33개 준정부기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5개 기관 중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 2014년도 주요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월 20일	대우조선해양 지분 0.55%, 블록세일을 통해 381억원 회수
1월~3월 중	제주은행 지분 1.27%, 장중매각을 통해 16억원 회수
2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 노사협력 대상 수상
3월 7일	예쓰저축은행 매각
3월 28일	한화생명보험 배당금으로 279억원 회수
3월 31일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와 MOU 체결
3월 31일	대원저축은행 대출금 73억원 회수
4월 8~9일	제주은행 배당금으로 4억원 회수
4월 14일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최초 차등보험료율 의결
4월 21일	여성저축은행 매각
4월 25일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으로 803억원 회수
4월 30일	예신저축은행 매각
5월 2일	해솔저축은행 계약이전
6월 13일	광주은행 지분 56.97%, 주식매매계약 체결
6월 23일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마련
6월 30일	경남은행 지분 56.97%, 주식매매계약 체결
7월 3일	예나래·예주저축은행 매각
7월 23일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와 MOU 체결
7월 23일	제주은행 지분 15.11%, 블록세일을 통해 226억원 회수
8월 13일	몽골 예금보험공사(DICoM)와 MOU 체결
10월 10일	경남은행, BS금융지주 앞 매각을 통해 12,269억원 회수 광주은행, JB금융지주 앞 매각을 통해 5,003억원 회수
11월 26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2월 2일	알바니아 예금보험원(ADIC) 및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DPF)과 MOU 체결
12월 3~4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12월 8일	우리은행 지분 5.94%, 매각을 통해 4,531억원 회수
12월 26일	한맥투자증권 계약이전
12월 29일	산림청 주관 2014년 산림정책분야 유공 산림청장 표창 수상

4. 통계

가. 부보금융기관¹⁾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금융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은행	55	54	54	55	56	57	56
(국내)	(17)	(17)	(17)	(17)	(17)	(17)	(17)
(외국계)	(38)	(37)	(37)	(38)	(39)	(40)	(39)
금융투자 ²⁾	60	115	118	117	115	117	116
보험	43	43	44	44	46	47	48
(생명보험)	(22)	(22)	(23)	(23)	(24)	(25)	(25)
(손해보험)	(21)	(21)	(21)	(21)	(22)	(22)	(23)
종합금융	2	2	1	1	1	1	1
저축은행 ³⁾	106	106	105	107	101	89	80
합계	266	320	322	324	319	311	301

주 : 1) 부보금융기관은 영업개시일부터 인·허가 취소일 또는 해·파산일까지 금융기관을 말함

2) 「자본시장법」(2009. 2월 시행)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2009. 2월 이전에는 증권사만 해당)

3) 저축은행중앙회(2007.12월 부보금융기관에 포함) 제외

나. 금융권별 부보예금¹⁾

(2014년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융권	2013(A)	2014(B)	증감(B-A)
은행	9,213,184	9,568,701	355,517
금융투자	183,469	183,806	337
보험	4,948,536	5,495,566	547,030
(생명보험)	(3,974,206)	(4,351,008)	(376,802)
(손해보험)	(974,330)	(1,144,558)	(170,228)
종합금융	7,088	6,847	△241
저축은행	342,529	307,920	△34,609
합계	14,694,806	15,562,840	868,034

주 : 1)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기관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부보금융기관 등의 예금을 제외한 금액(잔액기준)

다. 상환기금 수입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상환기금 설치 전 예금보험료 수입(억원) ²⁾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원)							
	1998 이전 ¹⁾	1999	2000	2001	2002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은 행	1,613	1,975	2,630	4,139	4,361	14,718	5,027	4,976	5,965	6,811	7,789	8,518	8,973	9,590
금융투자	-	51	156	218	262	687	156	185	169	213	227	226	202	200
보 험	2,322	1,260	1,781	2,416	2,780	10,559	1,543	1,683	1,782	1,943	2,137	2,352	3,004	3,176
(생명보험)	(1,800)	(1,011)	(1,402)	(1,938)	(2,295)	(8,446)	1,265	1,364	1,430	1,534	1,650	1,760	2,297	2,386
(손해보험)	(522)	(249)	(379)	(478)	(485)	(2,113)	278	319	352	409	487	592	707	790
종합금융	980	336	233	139	130	1,818	7	8	10	19	12	10	9	7
저축은행	2,407	377	323	529	604	4,240	430	491	593	715	718	521	394	323
신 협	402	162	281	407	641	1,893	116	129	137	170	205	228	248	263
합 계	7,724	4,161	5,404	7,848	8,778	33,915	7,280	7,472	8,656	9,871	11,087	11,855	12,830	13,560

주 : 1) 1998년 예금보험료 수입은 '98년초 예금보험기금 통합에 따라 해체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1998년 4월 1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을 포함
2) 200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라. 예금보험료 수입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2003 ¹⁾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은 행	4,775	4,960	4,869	4,987	5,027	4,808	5,291	5,451	4,795	3,748	3,947	4,197	56,855
금융투자	312	336	300	303	256	305	276	284	283	2	-	-	2,658
보 험	3,115	3,403	3,737	4,059	4,455	4,852	5,113	3,307	3,062	86	708	1,256	37,153
(생명보험)	(2,580)	(2,832)	(3,109)	(3,362)	(3,654)	(3,934)	(4,097)	(2,609)	(2,362)	(-14)	(221)	(811)	(29,557)
(손해보험)	(535)	(571)	(628)	(697)	(801)	(918)	(1,016)	(698)	(700)	(100)	(487)	(445)	(7,596)
종합금융	73	17	15	19	22	24	29	34	18	8	8	6	272
저축은행	667	793	974	1,116	1,306	1,483	1,737	2,524	2,331	1,344	253	256	14,785
특별계정 ²⁾	-	-	-	-	-	-	-	-	1,742	5,816	6,672	6,158	20,389
합 계 ³⁾	8,942	9,509	9,895	10,484	11,066	11,472	12,446	11,600	12,231	11,004	11,590	11,872	132,112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설치
3)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실적(2002년 舊 발행 예보채권)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77,617	36,600	453,765
금융투자	160	3	-	32,185	-	32,348
보 험	11,534	42,100	10,000	92,089	-	155,723
(생명보험)	(11,534)	(41,422)	-	(24,120)	-	(77,076)
(손해보험)	-	(678)	(10,000)	(67,969)	-	(78,647)
종합금융	65,120	-	12,600	73,344	-	151,064
저축은행	9,917	15,977	6,500	33,331	-	65,725
신 협	2,769	8,178	-	2,027	-	12,974
합 계	210,150	224,849	89,407	310,593	36,600	871,599 ¹⁾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바. 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¹⁾	자산매입 ¹⁾	대 출	합 계
은 행	222,039	139,189	-	81,064	-	442,292
금융투자	99,769	4,143	113	21,239	-	125,264
보 험	159,198	31,192	-	3,495	-	193,885
(생명보험)	56,697	27,519	-	3,495	-	87,710
(손해보험)	102,501	3,673	-	-	-	106,174
종합금융	26,931	7,431	182,718	-	-	217,080
저축은행	1	4,161	72,892	-	5,969	83,023
신 협	-	-	47,402	-	-	47,402
합 계	507,937	186,117	303,124	105,799	5,969	1,108,945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포함

사. 상환기금 자금지원 세부 내역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금액
출 자	서울은행	46,809
	제일은행	50,248
	한빛은행	60,286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1,923
	하나은행(하나·보람합병)	3,295
	조흥은행	27,179
	평화은행	4,930
	경남은행	2,590
	광주은행	1,704
	제주은행	531
	수협	11,581
	농협	962
	한아름종합금융회사	300
	하나로증권	24,912
	한스, 한국, 중앙증권	2
	영남증권	1,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
	서울보증보험	102,500
	대한생명보험	35,500
	국민, 태평양, 두원, 동아, 한덕, 조선생명보험	21,197
	한국투자신탁증권	51,649
	대한투자신탁증권	29,003
	정리금융공사	1
	대한, 국제화재보험	1
	현대투자신탁증권	19,116
	소 계	507,937
출 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5개 인수은행)	97,113
	한빛, 경남, 광주, 평화, 서울, 제주은행	29,677
	농협	870
	삼성, 흥국, 교보, 제일생명(4개 인수보험사)	11,641
	제일은행	11,528
	대한, 현대, 금호, 동양, SK생명보험	14,220
	부민금고 등	4,161
	대한화재	509
	우리(舊하나로)증권	7,431
	국제화재	739
	동양, 삼성, 현대, LG동부화재	2,425
	녹십자(대신)생명	1,393
	KB(한일)생명	265
	한국투자신탁증권	784
	대한투자신탁증권	630
	현대투자신탁증권	2,730
	소 계	186,117

구 분		지원금액	
예금보험금지급	직접지급	신용협동조합	47,402
		증권회사(4개)	113
		상호신용금고	12,335
		영남, 한솔, 한국증권	1
	정리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지급	한아름종합금융(증권 18개)	182,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금고 59개)	60,557
소 계		303,124	
자산매입	직접매입	제일은행(신주인수권부사채)	249
		제일은행(베트남, 뉴욕현지법인지분)	165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오토넷주식등)	8,570
	정리금융공사 대출을 통한 매입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588
		제일은행	79,063
		동아, 국민, 태평양, 대한, SK생명보험	3,495
		한국투자신탁증권	4,830
		대한투자신탁증권	6,539
		현대투자신탁증권	1,300
		소 계	105,799
대 출	상호신용금고(13개)	5,969	
	소 계	5,969	
총 계		1,108,945	

아.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226	-	-	-	226
(생명보험)	-	-	-	-	-	-
(손해보험)	-	226	-	-	-	226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3,655	229,354	36,247	1,136	775	271,167
합 계	4,866	254,122	50,659	6,027	994	316,668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자. 연도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금 액
2000 이전	103,457
2001	41,179
2002	26,634
2003	56,034
2004	56,672
2005	36,117
2006	34,001
2007	43,660
2008	23,980
2009	24,118
2010	29,295
2011	12,679
2012	13,769
2013	7,992
2014	24,449
누 계 ¹⁾	534,036

주 : 1) 현투증권 등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부담금 2,351억원(2004년도), 458억원(2006년도), 93억원(2007년도), 200억원(2012년도) 포함

차. 형태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¹⁾	대출금 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84,945	701	18,472	66,039	-	270,157
금융투자	12,121	3,231	78	18,004	-	33,435
보 험	39,177	888	4,310	2,419	-	46,795
(생명보험)	14,480	848	3,662	2,419	-	21,409
(손해보험)	24,697	40	648	-	-	25,385
종합금융	1,605	59	89,689	-	-	91,354
저축은행	-	343	51,791	-	5,969	58,103
신 협	-	4	34,188	-	-	34,192
합 계	237,849	5,226	198,530	86,462	5,969	534,036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카.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2014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

금융권별	1997년 말 총기관수 (A)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현 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 병	해산·파산, 영업이전등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11	-	16	48.5	1	18
비은행	2,062	196	244	593	1,033	50.1	213	1,242
• 종 금	30	22	8	-	30	100.0	1	1
• 증 권	36	6	9	3	18	50.0	32	50
• 보 험	50	10	7	7	24	48.0	30	56
• 자산운용	24	7	10	1	18	75.0	80	86
• 저축은행	231	143	31	1	175	75.8	31	87
• 신 협	1,666	2	166	581	749	45.0	18	935
• 리 스	25	6	13	-	19	76.0	21	27
합 계	2,095	201	255	593	1,049	50.1	214	1,260

자료 : 공적자금관리백서, 2014년 8월

타. 공적자금 지원 실적

(1997년 11월~2014년 12월말, 단위 : 조원)

금 용 권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합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용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 축 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 등		-	-	-	-	2.4	2.4
합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자료 : 금융위원회



이랜드타워



2014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발행인_ **곽 범 국**

편집인_ **박 태 준**

발행처_ **예금보험공사**

주 소_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 화_ 02) 758-0114

팩 스_ 02) 758-0220



예금자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금!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1. **보호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2.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
3. **보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증권사!



예금자 보호 안내문은 어디에 있나요?

01	모든 예금보호 대상 상품의 통장, 증권 등에는 안내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02	
03	보호한도는 소정의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초과된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04	



KDIC

2014 Annual Report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